

제 1절 집단면접조사 개요

강원도 학교구성원의 인권 실태조사에서 양적 접근방법인 온라인 설문조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질적 조사방법인 집단면접 조사를 도내 3권역별 11개 학교에서 진행하였다. 강원도 지역을 춘천권, 강릉권, 영월권으로 분류하였으며, 권역별 초·중·고(인문고/특성화고)별, 도·농별, 국·공·사립별 분류하였고, 1개교는 행복학교로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각 학교마다 학생 10명, 보호자 10명 내외, 교사 5명 내외로 집단면접에 참여하였으며, 집단설문지 내용을 중점으로 자유 토론을 진행하였다.

〈표 III-1〉 집단면접조사 대상

구분 지역	조사대상	대상	인원	소요 시간
춘천권	초등학교 1 (행복학교)	보호자	10명 이내	대상별 40분~60분
		학생	10명 이내	
		교사	5명 이내	
	중학교 1	보호자	10명 이내	
		학생	10명 이내	
		교사	5명 이내	
	고등학교 1 (국립고)	보호자	10명 이내	
		학생	10명 이내	
		교사	5명 이내	
	고등학교 1 (공립고)	보호자	10명 이내	
		학생	10명 이내	
		교사	5명 이내	
강릉권	초등학교 1	보호자	10명 이내	대상별 40분~60분
		학생	10명 이내	
		교사	5명 이내	
	중학교	학생	10명 이내	
		교사	5명 이내	
	고등학교 1 (사립여)	보호자	10명 이내	
		학생	10명 이내	
		교사	5명 이내	
	고등학교 1 (사립남)	학생	10명 이내	
		교사	5명 이내	
영월권	초등학교 1	보호자	10명 이내	대상별 40분~60분
		학생	10명 이내	
		교사	5명 이내	
	중학교 1	보호자	10명 이내	
		학생	10명 이내	
		교사	5명 이내	
	고등학교 1 (특성화고)	보호자	10명 이내	
		학생	10명 이내	
		교사	5명 이내	

1. 일반적인 인권상황

가. 부당한 차별이 있는지 여부

차별의 문제와 관련 하여는 성적에 의한 차별이 주로 문제되고 있었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도 이러한 차별을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없지 않았으나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성적에 의한 차별의 경험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더욱이 이러한 차별은 평준화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과도적으로 나타나는 갈등과 접목해 다소 무게 있게 다가왔다.

또한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율학습을 우열반으로 편성해 진행하거나 독서실 이용에 우열반 차이를 두는 등의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반면 성별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는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 여학생들에게 좀 더 관대하다는 문제제기가 약간 있으나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다만 경우에 따라 여학생들에 대한 처우를 합리적 차별이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이는 학생들도 보이는 점이 주목된다.

■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성적에 따른 차별 예시

① A학교의 경우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안내도 된다고 돈을 안 걸음.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만 시험 잘 보라고 이야기 함.

② B학교의 경우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애들한테 해 줘라.” 등 교사들이 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무시하고 비교하는 발언이 많음. / 옆 반이랑 성적으로 자꾸 비교한다. / 너네는 잘하는 게 없다 등등 / 공부 잘 하는 아이들 위주로 챙겨준다. 포트폴리오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 위주다.

③ C학교의 경우 비평준화 당시 성적하위권 학교였다가 평준화로 전환되어 평준화 제도로 입학한 학년과 이전 학년들과 비교함. / 2학년 학생이 1학년으로 처음 평준화 1세대로 입학할 당시 학교 지원이 많았다가, 이제는 1학년에게 투자한다. 방송부 전통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1학년을 위해 점심 방송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소수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 전통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④ D학교의 경우 성적으로 우열반을 나누고 우반은 좋은 독서실에서 공부하게 하고, 각종 학교 정보도 먼저 공지함.

■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성별에 따른 차별 예시

① A학교의 경우 점심시간에 여학생들을 먼저 밥 먹게 함, 그러나 여학우들이 밥 먹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문제제기는 안함.

② B학교의 경우 선생님에 따라 남학생들은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여학생들은 청소를 시키는 경우가 있음.

■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한 차별

① 부모님의 직업이 무엇인지 물어 봄.

② 전공에 따른 차별; 음악전공반이 있는 일부 인문계고에서 전공에 따른 차별이 존재함. 예를 들어 일반계(문이과) 학생에게 허용된 동아리 활동을 음악전공반의 학생에게 금지되어 있음.

③ 실장(반장)은 야간자율학습이 필수인 학교 있음.

■ 기타

학생이 선호하는 교사는 잘 따르고 존경하고 그렇지 않은 교사의 경우 무시하는 등 교사를 차별대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나. 두발이나 복장 등 외모에 있어서의 자기 개성 발현 가능 여부

염색이나 파마금지 등의 두발제한이나 화장 금지 등의 학교 규율이 있기는 하나 학교가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있어, 학생들이 두발에 대해서는 대부분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학교 단속이 엄격하지 않거나 단속을 하더라도 벌점부과에 불과하기 때문인 점, 학생들 스스로도 과도한 염색이나 화장 등에 대한 제한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교복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복장을 통한 자기 개성 발현의 가능성은 많지는 않았는데, 조사 대상 중고등학생들은 대부분 자유롭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복장에 대한 규율이나 단속이 강화될 때에 학생들의 합리적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 측 단속과 별개로 여학교의 경우, 화장이나 치마길이에 대한 선배들의 간섭과 강요가 있기도 하였는데, 후배 학생들은 이를 학생 간 인권침해로 느끼고 있었다.

■ 외모에 있어서의 자기 개성 발현 정도

- ① A학교의 경우 두발 단속은 없으나 염색 악세사리는 단속함. (1차 구두 지적, 2차 벌점 부과)
- ② B학교의 경우 염색, 파마금지, 치마길이 바지폭 제한 있어 단속함(벌점 부과)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음.
- ③ C학교의 경우 대부분 자유로우나 학교에서 매니큐어를 칠하는 것은 안 됨. 집에서 칠하고 다니는 것은 무방.
- ④ D학교의 경우 두발은 자유로운 편임. 화장이 금지되나 여학생들 화장하고 다님.
- ⑤ E학교의 경우 올해부터 치마길이 단속이 강화됨.
- ⑥ F학교의 경우 남학생들에게 반바지 착용 금지. 여름에 여학생들은 짧은 치마를 입는데 반해, 남학생들에게 반바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남녀 차별적인 요소도 있어서, 인권침해로 느끼고 있었음.
- ⑦ G학교의 경우 대부분 자유로운 편이나, 선배 언니들이 화장이나 치마단속을 한다면서 과도하게 간섭하고 혼내는 것이 학교생활을 힘들게 함. 조사학생들은 이를 선배로부터 당하는 인권침해로 느끼고 있었음.

다. 학생회나 학급회의 운영사항

학생회는 민주적으로 구성되고 있으나 학급회의 운영은 대부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학생자치활동은 특색 있는 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심지어 학생자치기구가 없는 학교도 있었다.

학생자치활동이 자치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의 특색을 보면, 학생자치활동이 학교의 오랜 전통으로 자리 잡은 학교이거나, 행복학교 등 학교장의 학교운영 방침이 소통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는 학교였다. 이러한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이 자치활동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으며, 타 학교에 비해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 운영에 잘 반영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등 학교생활을 즐거워하는 점이 주목된다.

■ 학생회 구성

A학교의 경우 학급반장은 있으나 학생자치기구가 없다. 학생자치기구가 없으므로 학급회의 및 전교회의를 하지 않음. 학생의견은 개개인이 수업시간 등을 이용하여 선생님께 말씀드리지만 학생 자발적인 활동이나 의견이 선생님께 전달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학생회 운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① A학교의 경우 학생들 의견을 수렴하기는 하나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생활복 문제 등) 교내 건의함 있으나 사용되지 않음.
- ② B학교의 경우 학생회라는 창구 있으나 의견제시 및 반영 어려움(반영하는 비율 0%) 담임선생님을 통해 일방적 통보가 많고 건의함 있으나 사용되지 않음(수거일자, 진행과정 모름) 선생님 통해서 의견제시해도 학교 결정이 우선임.
- ③ C학교의 경우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반영 잘 안됨. 학생회의 구성 자체가 문과에 치중되어 음악과의 경우 접근이나 참여에 제한 있음. 학생의견보다는 학생회 의견이 들어감. 보호자 의견만 들어감. 완전 위에서 아래로임.

■ 학생회 운영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경우

- ① A학교의 경우 전교회의 결정사항을 교장선생님께 직접 보고하고 있으며 학교 운영에 바로 반영됨.
- ② B학교의 경우 주1회 학급회의 진행, 학급별로 규칙도 정하고 지키지 못할 경우 학생들끼리 사과하기도 하고 청소시키거나 욕 안하기 팻말 걸기 함. 교실 내 건의함 이용, 건의사항 제출(여자화장실 낙서, 시설수리 요구 등) 하여 학교 운영에 반영시킴.
- ③ C학교의 경우 자치회가 체계적이고 자발적으로 운영됨
 - : 각반 회의 2주 1회, 약 20~30분 소요. 건의사항 학생자치회에 전달.
 - : 각 반 건의사항 논의 및 등교, 점심시간 무단외출, 급식지도, 흡연, 행사지도 등 자체적 활동.
 - : 하고 싶은 학생 누구나 신청 후 학생부 교사와 면담하고 자치회 합류.
 - : 같은 권역 내의 타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도 확인될 정도.

라. 학교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 중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은따) 등의 따돌림 현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학교 규모가 작은 학교 보다는 큰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이한 점은 학생 수가 적고 인적 네트워크가 잘 형성된 학교의 경우 학생들 스스로도 학교 폭력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학교 규모가 큰 경우 학교 폭력이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를 강화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이 크게 눈에 띄었다. 또한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한 학교나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 사이에서 선후배간 갈등의 피로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 고등학교의 경우

- ① 고등학교의 경우들은 대부분 은따는 있으나 집단 따돌림은 특별히 눈에 띄지 않음.
- ② C학교의 경우 여학우들 사이에서는 선배들이 치마길이나 화장을 단속하고 인사하라고 강요하거나 화장실 내 화장지도 자기 것이라고 쓰지말라고 강요함. 남학우들은 집단 따돌림이 없다고 답함.

■ 중학교의 경우

A학교의 경우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 있는데, 가해학생이 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항하기 힘들다. 한 번 따돌림을 당하면 주위 학생들도 덩달아 합류하는 경향이 있다. 학교폭력은 없는 편,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가 엄격함. 학폭위가 바로 열리는 편임.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옳다고 생각함.

■ 초등학교의 경우

- ① 따돌림은 별로 없다고들 답변하면서, 중학교에 많다고 이야기 함.

② B학교의 경우 학급 내 과잉행동학생 있는데, 함께 어울리려고 해도 해당 학생이 거부하고 도망. 예전에는 폭행, 집단 따돌림, 셔틀이 있었으나 현재는 없음.

마. 수업에 방해되는 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대응

수업에 방해되는 학생에 대해 예전에 비해 선생님들이 체벌을 하는 대신, 상벌제도를 운영하여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벌점 부과방식의 공정성과 효과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으나 이를 대체할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학교 전반적으로는 체벌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교사의 성향에 따라 학생에 대한 체벌을 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론 학교 전체 차원에서 체벌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학교도 있었는데, 학생들은 이를 불편하게 생각하면서도 학생 통제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체벌이 일상화 되어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학교 폭력 발생 시 무조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해결하려는 경향과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학교 내의 인권문제가 학교(학생수) 규모나 제도와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추후 이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학생 지도나 통제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학교도 발견되는 등 학교 내 사생활 침해 등과 관련한 인권의식 수준이 낮은 점으로 조사되었는데, 제도 마련 외에도 인권 교육 등 인권역량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상벌제도에 대한 학생들 생각

- ① 벌점 부과 전에 선생님이 말로 지적하기도 함.
- ② 일정 점수의 벌점이 채워지면, 봉사활동, 텁밭 가꾸기, 급식 혼자 먹기, 청소하기 등의 활동을 하여야 함.
- ③ 벌점 제도에 대한 공정성과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임
 : 선생님 앞에서만 칭찬받을 일 한다.
 : 벌점 받아서 일만 하면 되니 효과가 떨어짐.
- ④ 그러나 체벌이나 벌점제도 외의 대안이 없다고 생각함.

■ 체벌에 대한 학생들 생각

- ① A학교의 경우 체벌을 하는 선생님이 계시나, 감정적 대응이라고 느끼지 않음. 체벌을 하시는 선생님이 무서울 땐 무서우시나, 좋을 때는 아주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임.
- ② B학교의 경우 체벌이 심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있음. 예를 들어 교실에서 라면을 먹지 말라는 교사의 말을 어기고 학생이 라면을 먹자, 따귀를 때림. 원래 문제 있는 학생이긴 하나 심하게 때리는 것은 감정이 불편하다고 함. 그러나 대다수의 조사 대상 학생들은 적절한 체벌이 필요하다고 느낌. 그렇지 않으면 통제가 안 된다고 생각함.
- ③ C학교의 경우 과잉행동학생의 경우 의자에 묶고, 입에 테이프 붙인 적 있다고 함. 학생들은 장난처럼 했었다고 생각함.

■ CCTV 설치한 학교 있음

- ① A학교의 경우 여자화장실을 제외하고 교내에 설치되어 있음.
- ② B학교의 경우 CCTV 설치한 적 있었으나 현재는 제거됨.
- ③ C학교의 경우 CCTV가 왜 설치되었는지 모른다고 함.

바. 하루 수면시간

초등학생의 경우 수면시간은 8~9시간으로 수면부족을 느끼지 않았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하루 평균 수면시간이 대략 6시간 정도인 것으로 수면부족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고등학생들의 경우 학원을 1~2개 정도 다니고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등 학업양이 많고, 등교시간이 8시 10분 정도로 이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 선생님과의 소통

학교 차원에서 소통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우에는 선생님과의 소통은 전적으로 교사의 개인 성향에 따라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학생들은 젊은 교사 혹은 아예 나이가 많은 교사, 남자보다는 여자 교사와 소통을 편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과 일반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선생님과도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학교도 있었는데, 소통이 많을수록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 ① A학교의 경우 젊은 교사이거나 연세가 많으신 교사의 경우 대화시간이 많은 편임.
- ② B학교의 경우 담임 보다 특정 교사와 대화함.
- ③ C학교의 경우 상담실 운영(Wee, 성 고충 상담실).
- ④ D학교의 경우 학생과 교사의 소통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음. 매주 수요일 20분간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데, 대화를 원하는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는 시간임. 교장선생님과도 거부감 없이 소통의 시간을 가짐. 교장선생님께 직접 찾아가서 요구사항을 말하기도 함. 의사를 전달한 후 며칠 뒤에 학교시설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었음.

2.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생 생각

가. 학교생활에서 힘든 점, 불편한 점

학생들은 학업이나 학교 시설이나 급식, 교사나 교우관계 등 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대학진학이나 취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진로문제나 학업과 관련한 문제가 가장 힘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불편한 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는 학교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데에 소통이 얼마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 진로와 관련한 문제

A학교의 경우 주로 진로상담전문교사와 상담함.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친구와 상담함. 그 다음으로 부모님과 상담하고 있음.

■ 학업과 관련한 문제

- ① A학교의 경우 학업향상 및 성적 스트레스가 가장 힘들다. 수행평가중심이지만, 열심히 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힘들다. 학교에서 밀어주는 학생이 따로 있음.
- ② B학교의 경우 이과 중심으로 편향이 되어 있음.

■ 학교 운영과 관련한 문제

- ① A학교의 경우 등교시간이 너무 빠름.
- ② B학교의 경우 학교 예산 문제로 냉난방 사용을 너무 과도하게 절약하고 있음. 교복이 불편함(하복이 너무 더운 소재임).
- ③ C학교의 경우 동아리 예산 지원이 전무함.
- ④ D학교의 경우 규칙의 내용이 객관적이거나 명확하지 않고, 교사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집행됨. 교사들의 결정권한 부재로 학생친화적인 교사가 학생들을 위해 학교 측에 건의해도 효과가 없음.
- ⑤ E학교의 경우 선생님이 부족함. 예를 들어 가야금 전공시 가야금 전공 선생님이 아닌 일반 음악교사가 평가하고 있음.
- ⑥ F학교의 경우 불필요한 교과서 구매 강요함.

■ 학교 시설과 관련한 문제

- ① A학교의 경우 학교 시설이 너무 낡고, 학교가 더러움.
- ② B학교의 경우 학교 시설이 부족함. 음악과 학생의 경우 연습실 방음이 안 되어 개인연습이 불가함. 도서관의 도서가 많이 부족함.

■ 급식 운영과 관련한 문제

- ① A학교의 경우 급식의 양과 질 메뉴에 대한 불만이 많다. 급식량이 너무 적음, 음식을 버리면서도 학생들에게 추가 배식하지 않음.
- ② B학교의 경우 빈자리를 무조건 채워서 앉으라고 하는 등 자리배석 강요하여, 혼자 다른 반에서 식사하는 경우 많음.
- ③ C학교의 경우 메뉴 선정 시 학생의견을 수렴하지 않음.

■ 교우문제

- ① A학교의 경우 장난이 심한 학생, 폭력성향의 학생들과의 문제가 힘듦.
- ② B학교의 경우 같은 학년 학생들끼리는 문제가 없는데 선배언니들의 간섭이 너무 심해서 치마길이나 화장 등으로 혼내주는 등 선후배간 갈등이 제일 힘듦.

■ 기타

- ① A학교의 경우 교장선생님이 특이(갑자기 한 명씩 불러서 돌을 옮기라고 하심).
- ② B학교의 경우 학교생활 중 어려운 점 전혀 없다고 함. 유치원 때부터 같이 다닌 친구들도 있음. 한 학년에 2반이라 계속 같은 반 친구들이 있어 대화하기 편하고 남녀 학생들끼리 사이가 좋음. 오래된 친구들이라 생일선물 고를 때도 ‘애는 뭘 좋아하니까...’ 라며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함. 선생님과의 소통도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불편한 점이 바로 개선되고 있음.

나. 학생성장에 대한 학교의 지원여부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학교의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다. 특히 특기를 살려주는 교육이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학교의 지원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에도 공부 위주의 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동아리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학교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꿈을 꾸고 실현하는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로 동아리 활동이나 진로상담, 각 분야 전문가 초빙이나 과학교실 운영 등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농촌지역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꿈이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조사된 점은 특히 인상적이었다.

■ 학생들이 학교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예시

- ① A학교의 경우 야간자율학습 운영 / 공부하는 습관이 생기고 즐거움을 알게 됨. 야자는 힘들지만 성적은 오름.
- ② B학교의 경우 자습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③ C학교의 경우 교내 대회(대학 진학시 유리) 및 캠프 등이 다양해서 도움을 받음.
- ④ D학교의 경우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편(스포츠 클라이밍, 볼링, 영화감상, 독서, 쿠키, 공예, 카툰, 외국어 등) 교사 지도 있음.
- ⑤ E학교의 경우 동아리 활동을 선생님들께서 지도해주심. 진로상담은 설문조사 등으로 한 적도 있음. 분야별 유명한 분들 초청하여 강연도 들음.

■ 학생들이 학교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예시

- ① A학교의 경우 프로그램은 많은데 실질적인 지원은 없음.

- ② B학교의 경우 학교에서는 꿈 실현에 대한 지원보다는 공부위주로 지원함.
- ③ C학교의 경우 학교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음. 특기를 살려주는 교육이 필요함.

다. 학생의 삶(즐거운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점 또는 개선할 점

학교생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점으로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원활한 소통 및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이라는 점으로 집약할 수 있었다. 학교를 구성하는 학생 주체 스스로가 자신들의 생활을 직접 조율할 수 있을 때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녀공학이 즐거운 학교생활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하는 예시

- ① A학교의 경우 학생에게 자율권을 주는 것. 불편사항이 있어도 개선되지 않는다.
- ② B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것. 규율 강화시 학생들 의견을 수렴하거나 급식에 대한 불만사항들을 개선하여 주어야 함.
- ③ C학교의 경우 실력 없는 선생님이 많은데도 바뀌지 않음. 수업의 질을 위해 교사교체가 필요함.
- ④ D학교의 경우 학교 시설 자유 이용(적어도 점심시간에는 체육관 개방).
- ⑤ E학교의 경우 학교 시설 개선(위험시설 제거, 운동장을 잔디로 깐다, 샤워실 설치, 기숙사 이용, 쉴 공간 마련, 애벌레 살충 등).

■ 학업(대학 진학) 관련하여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하는 예시

- ① A학교의 경우 수업의 방향을 내신을 수능과 맞추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내신대비와 수능대비를 이중으로 해야 함.
- ② B학교의 경우 본래 수업이 자습시간으로 전환되지 않기.

■ 학생지도 측면에서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하는 예시

- ① A학교의 경우 직업체험이나 기타 다양한 방법의 특기적성교육 및 진로 모색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함.

- ② B학교의 경우 공부 잘하는 학생만 밀어주지 말고 다른 학생도 골고루 챙겨주는 것. 소외 학생들에게 참여 유도 및 독려(골고루 모든 학생에게로 확장).
- ③ C학교의 경우 동아리 지원을 더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음.

■ 기타

- ① A학교의 경우 핸드폰 수업시간에만 걷었으면 좋겠다.
- ② B학교의 경우 봄, 가을방학을 여름, 겨울방학으로 합쳤으면 좋겠다.
- ③ C학교의 경우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숙제검사나 철자법 교육 등을 이유로 일기장 검사하는 것이 쉽다. 일기장을 통해 선생님과 소통할 수 있는 면도 있으나 솔직한 이야기를 쓸 수 없다.
- ④ D학교의 경우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 ⑤ E학교의 경우 학교가 남녀공학인 점이 좋은 것 같다. 남녀공학이라 성격이 온화해지고 내신이나 수행평가도 여학우들이 챙겨준다.

3. 학생인권 보장제도

가. 유엔아동 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대부분의 학생들이 명칭을 들어보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처음 들어본 학생들도 많았는데, 인권분야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갖는 것 자체가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인권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① A학교의 경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알게 됨(유엔아동 권리협약은 모름).
- ② B학교의 경우 들어본 적 없다.
- ③ C학교의 경우 들어본 적 있다.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유엔아동 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외에 헌법 및 교육기본법 등 기타 법령도 있음.
- ④ D학교의 경우 굿네이버스에서 유엔아동 권리협약에 대한 수업을 실시함. 참여권 등 내용파악에 도움이 됨.
- ⑤ E학교의 경우 현실적이기 보다는 다소 형식적인 내용에 국한됨.

나. 학생인권조례가 인권보장에 미치는 영향

학생들 대부분은 학생인권조례가 생기면 인권보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강원도 현실에서는 힘들 것이라거나 학교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는 등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부재 및 타 도시에서의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하여 발생된 불필요한 갈등이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하고 있다.

- ① A학교의 경우 타 도시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이전 보다 체벌이 많이 없어졌음.
- ② B학교의 경우 두발 길이 자유 등에는 도움이 될 것임.
- ③ C학교의 경우 강원도 현실에서는 힘들 것임.
- ④ D학교의 경우 학교 질서가 무너지지 않을까, 체벌은 있어야 한다.

제 3절 보호자 집단면접조사 결과 기초분석

1. 자녀의 학교생활

가. 학교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보호자들은 자녀들이 학교에서 즐겁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 등도 중요하지만 학업성취 등 학생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고등학교 학부형의 경우, 비평준화에서 평준화 정책으로 바뀐 후 학교에서의 혼란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많았는데 학교문화의 변화와 새로운 정착의 중요한 과도기적인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업성취를 비롯하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기도 하는 등 학교 교육의 정상화 혹은 내실화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강원도 평준화 정책으로 인한 혼란 해결

- ① A학교의 경우 인권적 측면에서는 부정적일지라도 평준화 문제로 인한 다각화된 시각이 필요함. 학생들 간 수준 격차로 인해 우열반 구성이 필요함. 대학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 모색의 기회가 많아야 함.
- ② B학교의 경우 강원도 평준화 정책으로 인한 혼란 해결하여야 함. 학년별 학업 수준 차이로 인해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됨.

■ 면학분위기 조성 필요

- ① A학교의 경우 야간자율학습 시 교사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나 교사 수 부족함. 핸드폰을 수거하지 않아 학습 집중력 저하됨.
- ② B학교의 경우 면학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야간자율학습 공간이 매일 변경되어 학습 의지가 약해짐. 학생들이 하고 싶은 공부,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인성교육이 중요함.

- ① A학교의 경우 공부가 부족해도 인성이 먼저다. 인성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공부는 저절로 된다.
- ② B학교의 경우 공부가 부족해도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나, 실제 체육 외에 공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임.
- ③ C학교의 경우 아이가 선생님께 혼나는 경우, 선생님이 잘못 하셨어도 아이들한테 먼저 잘못했다고 한다.(아이들이 선생님을 따르지 않을까봐)

■ 안전한 학교 문화 정착

- ① A학교의 경우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교사가 교실에 자주 있어야 한다.
- ② B학교의 경우 면담을 자주 하는 등 학교 폭력 예방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 기타

- ① A학교의 경우 자녀가 학교생활을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② B학교의 경우 고등학생이다 보니 졸업 후 대학진학이나 취업 등을 위해 진로 모색의 기회를 자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학교생활에서 힘들어 하는 것

보호자들은 자녀들이 학업이나 진로와 관련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대학진학이나 취업 등 졸업 후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고, 특히 강원도의 평준화 정책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혼란을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모와 자녀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교우관계 역시 이에 비례하여 힘들어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등학교나 고등학생에 비하여 중학생의 경우 교우관계로 인한 혼란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자유롭고 활동이 활발할 시기에 틀에 박힌 듯 단조로운 학교생활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보호자들이 학교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 평준화 실시로 인한 혼란

- ① A학교의 경우 평준화 실시로 선후배간 갈등이 고조됨. 비평준화 때 성적하위 학교 3학년과 1, 2학년 학생들 간 대립구조 형성.
- ② B학교의 경우 평준화 실시 이후 학업 차이 등으로 학생이나 보호자들의 다양해진 요구를 수용하는 데에 학교 측의 운영이 미숙함.

■ 학업과 관련한 스트레스

- ① A학교의 경우 틀에 박힌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음. 동아리, 방과 후 활동이 많이 이루어져야 함. 동아리 활동 등의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을 존중할 필요 있음.
- ② B학교의 경우 체력부분, 수면부족을 힘들어 함. 야간자율학습 이후 집에 오면 약 12시에 취침하게 됨.

■ 진로문제, 취업고민

- ① A학교의 경우 특기적성교육이나 진로교육 부족.

② B학교의 경우 분야별 과목별 특기적성교육 필요.

③ C학교의 경우 진로 모색을 위한 체험활동 필요. 태안반도 사고나 세월호 사고가 있기는 하나 좀 더 실질적인 체험활동의 기회 제공이 중요함.

■ 교우관계

- ① A학교의 경우 14개의 다른 초등학교 출신들이 모이기 때문에 1학년 때 주도권 다툼이 있음.
- ② B학교의 경우 대부분 같은 초등학교 출신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가 익숙하지만, 반대로 소수의 학생이 초기에 느끼는 소외감이나 진입장벽에 따른 스트레스 있음.

■ 학교나 교사들로부터의 차별, 소통 등으로 인한 상처

- ① A학교의 경우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라 선생님으로부터 혼나면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는 것을 힘들어 함. 혼날 때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다른 학생과 차별 받는다고 느낄 때 힘들어 함.
- ② B학교의 경우 성적 등으로 반 전체를 싸잡아 매도할 때.
- ③ C학교의 경우 학생들 간 차별이 심한 편이라고 함. 14개 초등학교 출신이 모여 학생 구성이 다양함. 한부모 가정이 반에서 1~2명 정도임.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이 많았음. 반 분위기가 흐려지는 경우 있다.
- ④ D학교의 경우 한 부모 가정 결손가정이 약 50% 정도임에도 위 C학교 보호자들과 달리 교사가 학생을 차별한다거나 반 분위기가 흐려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음. (D학교는 농촌 지역에서도 외곽에 위치한 학교로 학생 수도 적고 학생 이동이 거의 없어 인적 네트워크가 강한 편임)

■ 기타

- ① A학교의 경우 학교 급식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 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② B학교의 경우 학교 시설이 너무 노후해서 불편하다. 역사가 깊은 학교라고 해서 왔는데 학교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 ③ C학교의 경우 특별히 학교생활에서 힘든 점이 없다.

다. 학교의 지도방법

보호자들은 과거에 비하여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많이 없어진 편이라고 느끼고 있었으나, 과하지 않다면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체벌 외의 지도방법으로는 상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호자들은 체벌과 상벌제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보호자들은 체벌 등의 문제보다 교사의 형식적인 태도를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사나 학교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거나 불만을 토로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는 교사의 지도방법이나 태도에 대해 교사나 학교 측과 갈등을 겪을 경우 자녀가 피해볼 것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체벌에 대한 보호자들의 생각

- ① A학교의 경우 교사의 성향에 따라 체벌이 이루어짐. 과하지 않은 정도에서는 필요함. 임의로 손으로 머리를 치는 것은 삼가주었으면 함. 아이도 상처지만 부모도 상처임.
- ② B학교의 경우 체벌은 필요함.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 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음. ‘사랑의 매’

■ 상벌제도에 대한 보호자들의 생각

- ① A학교의 경우 체벌 외에 상벌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별점이라고 해도 심한 활동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학교 텃밭 가꾸기 등의 일을 하는 것임.
- ② B학교의 경우 상벌제도를 운영하나 그 실효성은 의문임.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음.

■ 교사나 학교의 형식적인 태도에 대한 보호자들의 생각

- ① A학교의 경우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직업수행의 느낌이다.
- ② B학교의 경우 학교에 아이에 대해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가도 담임선생님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느낌이었음.
- ③ C학교의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분위기 있음. 피해학생 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의 보호자로서도 이 같은 태도는 좋지 않다고 생각함.

④ D학교의 경우 일단 선생님께 알리라고 함. 엄마들끼리 해결하다가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으니 담임이 중재하겠다는 입장이나, 선생님이 관련 부모에게 모두 다 연락하지는 않음. 피해자 부모에게만 연락해서 기분이 나쁨.

⑤ E학교의 경우 진로적성 검사 시 아이들이 성의 없이 임하는 바람에 결과가 엉뚱하게 나와 부모들의 항의가 많았음. 이왕 비용을 들여 검사하는 것인데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는 예산 낭비이기도 함.

⑥ F학교의 경우 야간자율학습 때에도 교사의 관리감독이 형식적임. 핸드폰 제재가 없어서 학습에 방해가 되기도 함.

라. 자녀들과의 대화 빈도 및 정도

자녀의 연령에 따라, 즉 자녀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인 경우에 따라 부모와의 대화시간 및 빈도,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학생의 경우 학생들이 대부분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보호자가 자녀와의 대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고, 고등학생의 경우 야간자율학습이나 기숙사생활 등 자녀와 보호자가 접촉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호자 중 아버지 보다는 어머니가 자녀의 성별과 무관하게 자녀와 더 깊이, 더 자주 대화하는 경향이 있고, 어머니는 아들보다는 딸과 더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아버지들의 경우 직업 등의 이유로 자녀들과 접촉할 기회 자체가 많지 않아,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초등학교

- ① A학교의 경우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다. 비밀까지 나눔. 남자아이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말을 걸어야 대화를 함. 아버지들이 직장 문제(주말부부 포함)로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없는 편이나 가능한 한 함께 하려고 하며 대화도 많은 편임.
- ② B학교의 경우 아이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화를 자주 함. 저학년일수록 아들 딸 구별 없이 대화를 많이 함. 고학년(6학년)의 경우 슬슬 사춘기 성향을 보이면서, 비밀 얘기도 잘 안하고 대화 횟수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
- ③ C학교의 경우 아빠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이한테 심어주려고 함.

■ 중학교

- ① A학교의 경우 사춘기이다 보니 대화 자체를 싫어한다. 이야기 하려고 하면 항상 휴대폰을 만지작거려서 걱정이다.
- ② B학교의 경우 대화를 해도 학교 얘기 공부얘기이고 마음 터놓고 하는 대화는 아니라 어렵다.
- ③ C학교의 경우 모녀간에는 친구들끼리의 비밀을 나눌 정도로 대화를 많이 한다. 자녀의 친구들과도 스스럼없이 대화하는 경우도 많음. 어머니에 의해 아버지와 자녀 간 대화는 횟수나 정도 면에서 현격하게 떨어진다. 아버지와 자녀 간 밀착이 어머니 보다 좋지 않아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해 반항하려고 함.
- ④ D학교의 경우 여전히 대화를 많이 한다. 아버지의 경우 자녀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많이 노력해야 가능함. 그래도 자녀들과 대화가 잘 되는 편임.
- ⑤ E학교의 경우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대화 횟수가 적고, 속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
- ⑥ F학교의 경우 자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정 상 전학을 하게 되어 자녀와의 갈등이 있음. 대화가 어려운 면이 있지만 노력해서 점차 나아짐.

■ 고등학교

- ① A학교의 경우 대화할 시간이 부족함. 야간자율학습이 끝나서 집에 오는 시간이 11시여서 씻고 자기 바쁨. 기숙학생의 경우 한 달에 1번 외박 등.
- ② B학교의 경우 기숙학생의 경우 한 달에 1번 외박할 때에 대화하기 때문에 많이 하지는 않음. 부족한 대화는 전화나 카톡 등을 다른 수단으로 보충함.
- ③ C학교의 경우 개인 성향 차가 있으나 엄마와는 대화가 잘 되는 편임. 아버지와는 용돈이 필요할 때 대화하는 편임.
- ④ D학교의 경우 남자 아이들의 경우 대화가 많지 않으나 급식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거나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학생들로 인한 불편함에 대해 이야기함.

2. 보호자의 학교 참여

가. 학교운영위원회의 보호자 참여 정도 및 논의사항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보호자의 학교 운영에 대한 참여는 매우 미진한 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호자가 학교 운영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보호자의 역할은 학교 행사시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보호자들이 이에 대한 불만이 크지 않았으며, 도농학교 중 농촌지역 학교 일수록 이 같은 역할 이상으로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행복학교 등 교장선생님의 성향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호자가 참여하는 정도나 논의사항의 범위가 달라졌다. 특히 행복학교의 경우 보호자의 학교운영참여가 매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보호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 학교운영위원회에 보호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 ① A학교의 경우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연 2회 실시, 결정이 필요할 때 수시 모임. 학년 별로 보호자장을 선출. 자녀가 임원이 아니더라도 보호자가 보호자회나 운영위원회 활동 가능함. 1년에 여름, 겨울 종합평가를 실시하는데 보호자 참여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보호자 의견 제시 및 수렴, 학교 방문 시 부담이 없음.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보호자 전체 의견 수렴(춘천시장의 반대로 무상급식 진행이 어렵게 되자 설문 조사를 통해 도교육청에 건의하여 일부 지원받음. 세월호 참사로 수학여행에 관하여 설문조사 하였으나 반대 의견 많아 보류결정 및 2학기 재논의키로 함) 상향식 의사 결정 구조로 만족스러움. 개인 보호자 의견이 아닌 학년 내 보호자들의 의견이 취합되어 좋음. 학교 행사 시 보호자 봉사 등은 강요가 아닌 신청방식이라 여러 보호자에게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어 바람직함.

한편 이 학교의 경우, 보호자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보호자 참여 프로그램이 다양해 다른 학교와 차별화됨. 보호자 제안 프로그램이 좋을 때는 몇 년 씩 연속 진행되는데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아도 주변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가능함.

- ② B학교의 경우 한 한기에 2번, 예산안 심의, 교과서 채택, 방과 후 교사 채택, 학교 생활 윤리 규정 개정 등을 논의함. 논의 사항에 대해 미리 안내책자를 주시고 회의 시

에 부연 설명해주심.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의 성향에 따라 학교별 차이 있다.

③ C학교의 경우 3개월에 한 번, 선생님 6~7명, 보호자 5명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함. 과거에 비해 학교 운영시스템이 많이 변함. 예산 경비 문제, 등굣길 위험한 곳 시정 건의 등을 논의하고 결정함.

■ 보호자가 학교운영위원회에 형식적으로 참가하거나 참가하지 않는 경우

① A학교의 경우 정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학교와 보호자 간 공식화 된 창구는 없다.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보호자 모임이 있으나 보호자 회장의 성향에 따라 운영됨.

② B학교의 경우 정규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더라도 의견 제시하는 비율이 낮음. 의견을 제시해도 반영되거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음. 교장선생님의 재량권이 집중되고 있음(개선요구에 일부만 수용) 수학여행, 운동회 금지가 교육부 지침이라고 들음.

③ C학교의 경우 필요시에 회의함. 주로 행사 이동수단, 업체, 메뉴 등 행사 지원 성격의 일을 함.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보호자 모임이 있음(주로 학년별, 자발적 모임) 전체 보호자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의사 결정하는 경우 있음 (수학여행, 운동회, 소풍 등)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는 잘 수용되는 편임.

④ D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외 보호자위원회가 있음. 비전 5기(월 1회 정기 모임) 강원도교육청 보호자회 지원 사업에 제안하여 별도 예산으로 150만원 지원받아 행사를 기획 중에 있음.

다. 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보호자의 역할 혹은 기여방법

보호자들이 학교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에 기여할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호자들이 학교에 끊임없이 개선사항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학교 시설 등의 문제에 국한되는 측면이 있으며, 자녀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서 교사 개개인의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학생 성장에 대하여

가. 학생성장을 위한 학교의 노력

보호자들은 학생성장을 위한 학교의 노력이 교장이나 교감의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행복학교나 교장, 교감의 노력이 많았던 경우, 인사 이동 등으로 교장 등 책임자가 교체되는 경우 기존에 있어왔던 학교의 노력이 줄어드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다. 좋은 사례가 추진된 경우 이를 시스템화하여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학교 운영에 변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보호자들도 학생인권이나 학생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제도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학교가 학생성장을 위해 학생에 대해서만 아니라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는 사례의 경우 그 효과에 대한 보호자 만족도가 높은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 보호자들이 학교의 노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례

① A학교의 경우(교장공모제, 창의인성학교)

- 자녀들의 꿈에 대한 학교 측 지원이 많은 편임. 다양한 활동(과학교실-관찰이나 실험도 수행, 뮤지컬, 강연 등)을 통해 아이들의 꿈이 다양하게 형성된다고 생각함. 강연은 사진작가, 시인, 작가 등 다양한 분들이 오시고, 강연 후에도 아이들과 교류하여 좋음. 선생님들이 지도하시는 동아리 활동에 대해 만족함.

- 방과 후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읍내에 있는 학교와 방과 후 활동이 비슷하더라도 학생 수가 적어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됨).

- 지역적으로 군의 지원을 받아 뉴질랜드로 1달간 어학연수를 갈 기회가 있어 좋음.
- 아직 초등학생들이기는 하나 도심 지역이 아니어도 교육에 대한 불안감은 없음. 이 지역에서도 우수대학 진학이 많다고 함.

② B학교의 경우(행복학교)

- 행복학교로 시행되는 과정에 서로 간 오해로 인해 혼란 있었음. 임시교장 등이 있었음. 각 교장마다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함.

- 교사가 아이들에게 존댓말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아이 자존감 회복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음. 교사가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자세가 필요함.

- 행정업무로 인해 교사가 학생소통에 소홀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함.

- 학생인권문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학교 내 폭행이 타 학교에 비해 수준이 낮은 편임.
- 보호자 교육이나 동아리 활동 적극 권장 및 기회 제공
 - : 프로그램 사례-아버지와 텃밭 가꾸기, 아버지와 1박2일 캠프, 어머님들 비폭력대화 등,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인근 주민 모두 신청 참여 가능함.

③ C학교의 경우

- 농촌지역이라 학생들의 등하교가 가장 큰 문제였으나, 몇 년 전 교감선생님의 노력으로 전 학생 택시를 통한 하교가 이루어질 수 있었음. 교감선생님의 전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택시를 통한 안전한 하교가 이루어지고 있음.(전근 후 2년이 지난 시점이라 예전만 못하지만, 좋은 점이 제도화 되어 다행임) 이 같은 노력으로 농촌지역의 불편함이 해소되면서 상대적으로 장점이 부각되고, 도심지역에서 전학 오는 경우도 생기는 등 학생성장이 곧 학교성장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하였음.

■ 보호자들이 학교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항(학교에 바라는 점)

- ① A학교의 경우 학생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생들을 많이 칭찬하고 격려해 주면 좋겠다. 학교 내 갈등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② B학교의 경우 분야별 과목별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진로 모색을 위한 체험활동이 필요하다.
- ③ C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취약하다. 동아리 활동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
- ④ D학교의 경우 국민체조, 스트레칭 등 학생들의 운동부족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 ⑤ E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너무 늦게 하교하고 있음.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자율적 선택권 보장하거나 하교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⑥ F학교의 경우 학생건강문제와 관련하여 흡연 학생들을 위한 금연관련 홍보 및 금연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나. 학생성장을 위한 보호자의 노력

폐쇄한 도서관을 다시 운영하도록 건의하는 등 보호자가 개선할 사항을 학교에 꾸준히 요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시설이나 제도 개선과 달리 교사 개인에 대한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보호자 입장에서 적극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학생성장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보호자들은 지역사회가 학교 간 격차 해소 등 개별학교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학생성장에 대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지역행사 시 학생들을 이용하려는 그릇된 자세를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① A학교의 경우 춘천 소재 고등학교 연합 체육대회 등 행사가 본래취지에서 어긋나 정치적 성과로 이용되는 부분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② B학교의 경우 학교 간 격차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 인권에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③ C학교의 경우 지자체의 행사에 학생을 동원하는 일을 줄이고, 꼭 필요할 시에는 학생들이 불편하거나 힘든 점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라. 자녀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교육당국에 요구할 점

보호자들은 교육당국의 잦은 정책 변경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 추진에 대해 불만과 불신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등학교 자녀를 둔 보호자의 경우 대학진학과 관련한 입시정책의 부당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시험폐지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보호자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더욱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하고 있었다.

- ① A학교의 경우 자주 바뀌는 입시정책 부당함. 임시사정관 제도 등으로 학생 성적이 통제도구로 변질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므로, 보다 다양화된 입시 제도가 필요함.
- ② B학교의 경우 예술중점 학교에만 도 교육청 예산(3억)이 편중되어 있어 일반 학생들이 소외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야 함.
- ③ C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시험이 없어지는 분위기가 오히려 학습까지도 안 해주는 느낌이다. 중고등학교에서도 아예 시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학생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결과가 됨.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정책 추진이 아쉬움.

4. 학생인권 보장제도

■ 유엔아동 권리협약이나 학생인권조례의 인식의 정도

뉴스 보도나 설문조사를 통해 명칭을 알고는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들은 교육청이나 학교 측의 홍보 의지에 따라 학생인권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① A학교의 경우 명칭은 들어봤으나 자세한 내용을 모름.
- ② B학교의 경우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타 도시에서의 실시 등으로 초기에는 이슈화가 되어 관심이 많았었는데, 교육청의 홍보 부족으로 이 같은 분위기가 침체되었음.
- ③ C학교의 경우 조례 청구 보호자 서명 활동을 진행한 적이 있음.

■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보호자 의견

현실에서 학생인권이 여러 면에서 침해되는 상황이 많이 있으며, 조례 내용이나 취지가 학생인권보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우려는 조례 안에서 내용으로 보완하면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① A학교의 경우 학생인권과 교권은 동일하지 않다(학생인권교권) 학생인권이 더 존중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해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다.
- ② B학교의 경우 동성애 문제 등 보수 층 반발 많으나, 학생인권조례는 꼭 필요하다.
- ③ C학교의 경우 실제 중학교에서 여중생 치마단속으로 교사가 치마를 마구 찢었다고 하는데 인권보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기준이 조례로 정해질 필요가 있다.
- ④ D학교의 경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체벌이 줄어들거나 두발 자유화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학생인권조례 자체는 학생인권에 매우 도움이 된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면 되는 일이지 조례 제정 자체를 반대해서는 안 된다.

■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보호자 의견

조례 내용이나 취지에는 공감하나,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해 학생인권이 남발되고 교권이 추락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① A학교의 경우 조례의 내용이나 취지는 좋으나, 남발되는 경향이 있을까 우려스럽다.
- ② B학교의 경우 교권이 추락하는 것이 우려스럽다.

제 4절 교사 집단면접조사 결과 기초분석

1. 교육활동 환경

가. 한 학급당 학생 수

수업 분위기, 학생 생활공간, 학생 지도 면에서 학생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과도한 학생수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사들은 약 20명 내외를 이상적인 학생수로 생각하고 있으며, 과도한 학생수를 적정 학생수로 조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 ① 고등학교의 경우 35~40명 정도
- ② 중학교의 경우 32~35명 정도
- ③ 초등학교의 경우 20~25명 정도(약 17명인 경우도 있음)

나. 수업량

전반적으로 교사의 수업량이 많아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중고 교사의 수업시수는 약 16시간 내외(담임시수)였으며, 실질적으로 동아리나 방과 후 수업, 야간자율학습을 포함하면 약 20~25시간 이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① A학교의 경우 위의 수업량 외에도 주말 당직 업무도 별도로 주어짐.
- ② B학교의 경우 수업량은 교육정책이 바뀔 때마다 변동이 있음.
- ③ C학교의 경우 담임시수가 약 6~8시간이고, 원로교사는 수업량을 더 배려해줌. 타 학교와 비슷하다고 말씀하시나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음.
- ④ D학교의 경우 시내학교에 비해 군 단위 학교는 수업시수가 낮은 편이다(시내 교사 의견으로 실제 군 단위 학교의 경우 시수가 더 많기도 하였음).

다. 행정업무 분담 (행정담당자 배정)

■ 행정업무 분담 방법

행정업무 분담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별도의 인사위원회 등의 조직을 구성하여 이를 통해 행정업무를 분담하는 방법과 별도의 조직 없이 교사 간 협의를 통하여 행정업무를 분담하는 방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느 방법이든 행정업무 분담에 있어서의 교사의 불만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① A학교의 경우 별도의 인사위원회 구성되어, 교사의 특성에 따라 협의 후 관련 업무 배정함. 업무 분담시 소통이 잘 되는 편임.
- ② B학교의 경우 별도의 인사위원회(위원장 교감, 남교사 2명, 여교사 2명) 구성되어, 담임 비담임 간 행정 업무를 분담하고 기타 업무 분장 및 포상, 성과 부분에 관여함. 담임보다 비담임의 경우 행정 업무가 더해짐.
- ③ C학교의 경우 수시로 부장교사, 평교사 간 대화를 통한 업무조정.
- ④ D학교의 경우 업무순환제 도입(교무부-연구부-학생부 등)하고 있음.

■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많다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많아 학생지도나 교육 등 교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회의 국정감사 시기에는 다수의 국회의원이 중첩되는 내용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서 중간에 이를 필터링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① A학교의 경우 비슷한 행정업무가 많다. 특정시기가 되면, 국회의원들이 각각 요구하는 자료가 너무 많고 중첩적이다.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어서 결국 각각 자료 제공해야 함. 비슷한 행정업무를 중간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 ② B학교의 경우 해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요구한다. 과거 제출한 자료를 왜 참고 안하고 해마다 요구하는지 모르겠다.
- ③ C학교의 경우 부임 전 과거 사실에 대한 자료 요구하는 등 만들기 어려운 자료 요청이 많다.
- ④ D학교의 경우 행정업무로 인해 수업을 준비하거나 학생들 상담 등 교사 본연의 업무 수행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 ⑤ E학교의 경우 방과 후 학교 강사비 계산을 하기도 하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교사 본연의 업무인가에 대한 회의가 듦다.

■ 행정담당자 배정

학교 규모에 따라 1~2명 정도 전담 행정담당자가 배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업무량 분담의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공문은 교사가 담당해야하는 등 여전히 업무량이 과도하여 인원 충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조사되었다.

진로 상담의 경우 전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담임교사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므로 업무량에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국립학교의 경우 도교육청의 업무지시(상담교사 배치) 사항보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행정담당자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기본적인 담임 업무가 많다

과거에 비해 담임 업무가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은 나이스 생활기록부의 기록 업무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활기록부가 입시자료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록해야 하고, 기록해야 할 사항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으며(예, 20페이지 정도, 한 아 이당 A4 2장.....), 학급당 학생수가 40명 정도로 많을 때엔 업무량이 상당하였다. 특히나 수업이나 학생지도 등의 담임 업무 외에도 동아리나 자치법정 등 프로그램 운영 시 교사가 담당해야하는 업무는 크게 늘었으며,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운영까지 도맡아야

해서 학교 운영에 제안이나 의견을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기타

사립학교의 경우 공립학교에 비해 업무량이 더 많다고 느끼고 있었다. 상담교사1명, 행정보조교사 2명, 진로담당교사 1명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여유시간

행정업무로 인해 쉬는 시간을 모두 할애하므로 학생, 보호자 상담시간을 낼 수도 없고 개인적인 여유시간을 쓸 시간이 없다고 느끼고 있다. 퇴근하면 7시 정도로 따로 애쓰지 않으면 여유시간을 내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사기업체에 다니는 직장인보다는 여전이 나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 수업준비시간

교사들은 하루 평균 약 2시간 정도 수업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업시간에 비해 약 2배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실제 수업에 비해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2. 교내 의사소통관계 등

가. 직원회의 개최 빈도

매주 적어도 1~2회 이상 직원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전달사항을 하달하는 시간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직원회의를 통한 의견수렴보다는 의견교환이 필요할 때 교사 간 수시로 대화나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① A학교의 경우 부장회의 매주 1회, 전체직원회의 한 달 1회.

② B학교의 경우 부장회의 매주 1회, 전체직원회의 2주 1회, 격주 전체회의에서 부장회의 결정이 바뀌지 않음, 미리 각 부 교사를 의견 취합 후 부장회의를 거치기 때문임,

각 부장이 의견을 수렴하여 간부회의 참여, 정규 회의라기보다 수시회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의사 결정됨. 평교사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편임. 회식에서도 의견 교류 및 결정되기도 함.

③ C학교의 경우 평교사회에서는 의견을 취합하나 반영은 낮은 편. 타 학교보다 의견은 자유롭게 표현함. 공식적인 소통창구가 없어 한계가 있음. 술자리에서 많이 얘기할 하기도 함.

④ D학교의 경우 교사 일인당 최소 약 10개의 회의가 있음.

⑤ E학교의 경우 매주 화요일 회의 진행. 작은 학교라 사례 있을 때마다 전체 회의함.

나. 학교운영사항에 대한 참여 및 결정 권한 유무

학교운영사항에 대한 교사의 참여 정도 및 결정권한 유무는 학교장의 성향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사들의 의견 제시는 자유로운 편이나 이를 학교운영에 반영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조사되었다.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한 소통보다는 회식 자리에서의 대화 등 다른 소통 창구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교사들 스스로 학교운영에 자율권이 많다고 느끼지는 않고 있었다.

① A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등 참여나 결정 권한은 없음. 담임협의회는 아이들에 대한 논의. 부장교사도 결정권한 없음. 학교 운영에 의견 피력 못함.

② B학교의 경우 결론이나 방향이 정해진 상태에서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다보니 표현의 자유가 온전히 인정되고 도출된 의견이 반영된다고 보기 어려움. 교사의 자율권을 준다고는 하나 실제로 자율권이 별로 없음. 그래서 회의라기보다는 협의가 맞다. 교육청 예산을 보더라도 선생님 의견이 반영된다고 보기 어려움.

③ C학교의 경우 공식적인 참여 기회보다는 회식 등 다른 소통창구 이용함. 대체로 교장이 잘 수용해주는 편임.

④ D학교의 경우 교장선생님의 방향을 거스르기가 어려움. 평교사의 의견을 교장에게 그대로 전달하기에는 조직상(관계상) 어려운 경우 있음.

⑤ E학교의 경우 사회의 문화가 좋다. 평교사 의견 반영 높음. 학교장 권한 낮음. 학교장이 거의 다 결재해주는 편. 교장이나 교사가 바뀌게 되면 유지될 지 판단 어려움.

⑥ F학교의 경우 교사는 국가지침에 따라 명령을 따르는 수동적 지위였음. 수학여행 등은 세월호 참사 후 교육부 중단권고 지침이 내려와서 결정함. 전 국민적 애도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음.

다. 교사들 간 커뮤니티 존재 여부

학교에서 교사들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는 분위기이나 교사들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활동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사들 관계가 친밀할수록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 되지만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 거주지와 학교와의 거리가 멀어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나 교수 개발 및 업무 할애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교사 친밀도와 상관없이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동아리 활동은 스포츠 활동이나 친목동아리 등이 있으며, 회식문화가 발달한 학교도 있었으나 음주가 잦은 동아리 활동등은 학교생활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부정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① A학교의 경우 교사 간 교류나 친밀도는 매우 좋은 편이나, 학교 주변에 거주하지 않고 원주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시간 관계상 동아리 활동이 꾸준히 지속되기 어려움. 한달에 한 번 친목행사 있음.

② B학교의 경우 교사간 커뮤니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함. 교사 동아리 진행. 예산 지원이 필요, 주로 주말을 이용한 자전거 타기 등 스포츠 활동.

③ C학교의 경우 모교 출신 선생님들 동창회 모임(타교사와 차별은 없음).

④ D학교의 경우 부장님이 매주 강의도 해주고 14명 선생님이 참여함(감정이나 대화기법)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 주말에 모여 식사도 함.

⑤ E학교의 경우 별도로 도 예산을 지원받아 스마트교과연구회 운영(스마트교과연구회가 도예산을 받아 커뮤니티 운영 중이라는 교사의 설명과 달리, 학생과 보호자는 교사 자체의 교체를 요구할 정도로 교과연구가 미진하다고 평가함)

⑥ F학교의 경우 수업개발로 인해 다른 곳에 눈 돌리기 힘들다. 교사간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고 있지만 젊은 선생님들은 심적으로 여유가 없어 동아리 활동을 안하기도 함

라. 학생들과의 대화창구

매 학기 초에 개별면담을 1인 2회 정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수시로 면담하고 있으며, 카톡이나 문자, 학급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학생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사들은 남자보다는 여자교사가, 나이가 많은 교사보다는 젊은 교사를 학생들이 대화상대로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학교폭력문제를 전담시켜 상담교사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학생들과 대화를 통하여 알게 된 요구사항(정수기 설치, 급식메뉴 개선, 화장실 세면시설 확장 등)을 수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학생인권 증진에 있어서의 교사의 역할

가. 교사가 학생인권 증진의 주체로 인정받는지 여부

교사가 학생인권 증진의 주체인 것은 분명하나, 교사들은 대내외적으로 학생인권 증진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 대내적 요인

- ① A학교의 경우 학생들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하지만 지도가 어려움
- ② B학교의 경우 상벌제도, 특히 벌점부과제도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 갈등 고조시 벌점 외 다른 대안 없으나, 벌점에 대한 학생들 반응이 무감각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 필요함. 벌점으로 이루어진 관계는 문제가 있다. 교사와 제자간의 관계를 벌점으로 처리할 수 없다. ‘법적으로 처리해!’ 같은 관계라서 인간관계가 사라지는 느낌. “벌점으로 처리하세요.”라고 요구하는 학생도 있는데 이 경우 지도가 이루어 질 수 없음.
- ③ C학교의 경우 교사들의 학교 운영에 대한 참여의 기회나 결정 권한이 현저히 낮음. 학생들 의견 제한적으로 수용되기 때문에 학생인권 증진이 낮음.
- ④ D학교의 경우 학생인권, 교사인권 함께 존중 받아야함
- ⑤ E학교의 경우 주요과목 외 과목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배제되는 느낌을 받음

■ 대외적 요인

- ① A학교의 경우 학생인권이 잘못 전달되어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을 대립구도로 만들어 가는 것은 문제임. 예를 들어 학생인권 80% 향상이 교사인권 50% 하락을 가져온다거나 조례 제정을 통해 교사가 가해자로 돌변하는 경우 등
- ② B학교의 경우 학생인권조례 관련 도교육청 행사 시 학생만 참여하는 문제 있음. 공청회 등을 통해 교사들 의견 취합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 ③ C학교의 경우 교외 폭력에 대해서도 교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합리함(관리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최종 책임을 교사가 무는 것임) 제도와 사회적 인식에 의해 교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불합리함.
- ④ D학교의 경우 조례만으로 일시적 해소 어려움 (10년 계획해서 천천히 진행).
- ⑤ E학교의 경우 교사로서의 사명감 보다는 직업으로써 임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음.

나. 교사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의 장애

학생 지도 및 교수라는 교사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과다한 학생수나 학교장과의 갈등 등 교내 장애요인과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가정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교외 장애요인과 있으나, 학교폭력위원회의 엄격한 제도 운영이나 세분화 된 지도지침 등으로 교사의 재량권이 대폭 축소되는 등의 제도적인 부분도 장애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교내 장애요인

- 학급당 과다한 학생 수
-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따른 제약
- 교육법의 청소년을 지도하는데 다른 제도로서 교사를 구속하는 것
- 교사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없다
- 교수권 보장
- 학교장 등과의 의견 갈등

■ 교외 장애요인

- 가정교육이 절대적으로 문제임
-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없음

- 공동체 의식이 약하고 개인주의적 부모가 많다
- 우리의 아이 성장 보다는 자신의 아이 성장에만 관심이 집중
- 교사와 싸우려고 하는 보호자나 학생이 있고, 교사에 대한 민원제기도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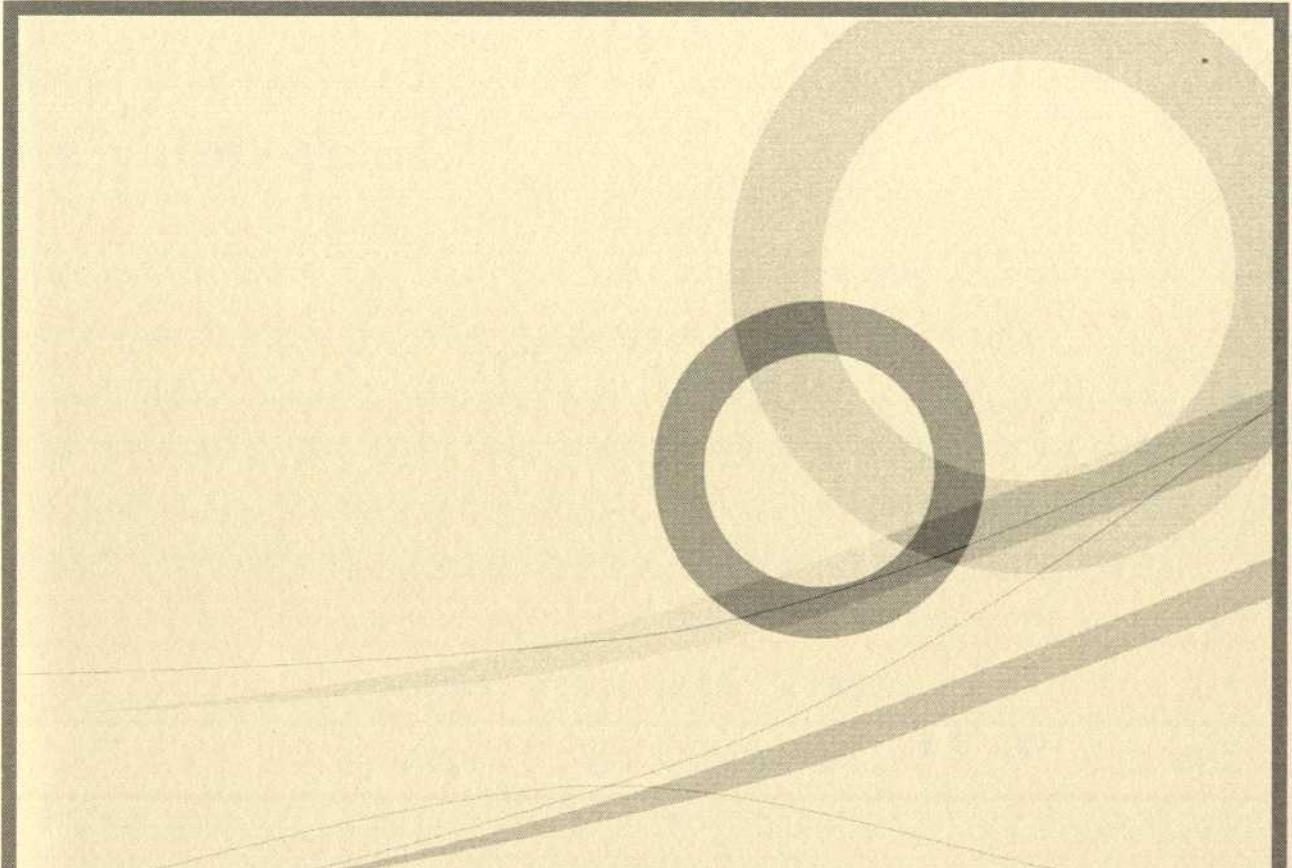
■ 제도적 장애요인

- 학폭위 제도가 너무 엄격해서 아이들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있다.
- 학교 폭력 해마다 약 7건 정도 열림/ 올해는 1번
: 이유는 선생님들의 체벌 등 학생부 규율 강화
(학교가 바뀌려면 학생의 인권을 뺏으면 된다는 교사의 농담이 인상적임)
- 생활지도 시 가이드라인이 세분화 되면 교사로서의 재량권이 축소
: 무릎 끓리면 안되고, 의자는 되고 안되고...
이러한 세부 지침을 미리 학생들이 알아서 오히려 이를 빌미로 반항함 경찰에 신고한다는 학생도 있음

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 민주적 학교 운영
- 교사회의가 의결기구 역할을 하도록 정책적으로 규정
학교장을 견제기구로 자리매김하도록
- 이미 학원에서 배우고 온 아이들 별도로 다르게 교육하여야 하는 등 교육현장에서의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함
- 가정내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이로 인해 교사의 업무가 줄고, 수업 준비시간 확보나 학생 상담 등 교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됨
- 학생관리, 보호자 관리가 잘 이루어져서 교사와 상호 신뢰회복이 중요
- 보호자 교육이 필요함
: 교권강화 및 학생의 가정 내 교육에 대한 교육 필요
- 교육부 정책의 지속화(정치적 변동에도 변함없는 정책 지속)
-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정책수립
- 도교육청, 학교 내 재정부분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어야 함.

- 교육청과 일선 학교 사이의 괴리감 해소
- 도내 조례제정의 문제점
 - : 학교 현실을 모르는 행정가들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문제임
 - : 행정가와 현직 교사간 간극을 좁히고 함께 조례를 만들어야 함
 - : 조례나 제도에 소외 학생들을 위한 시스템도 추가 구성되어야 함
 - : 학교의 공동 구성체의 인권을 모두 고려하여 학생인권조례보다는 학교인권 등으로 명칭이 바뀌어야 함.
 - : 단계적 학생인권 교육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인권의식을 신장시키는 절차가 생략된 채 조례라는 형식이 먼저 제공되는 면이 부정적
 - : 조례 제정은 필요하나 사회적, 단계적 합의가 필요하다
 - : 전교조 출신 교육감의 정치적인 요소로 사용되는 것 같다
 - : 학생인권이 학생보호권으로 현실에 맞게 수정될 필요 있음
- 교사 수 충원(법률적 한계)
- 과도한 업무 및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만 강조되는 면 때문에 교사에 대한 심리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 교사의 삶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확대되거나 급여 수준이 재조정될 필요 있다



제 4 장 심화 분석

제4장 심화 분석

제1절 학교생활만족도(PISA)⁹⁾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강원도교육청의 교육기본방향인 “행복한 학교”라는 관점을 들여다보기 위해,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를 알아보는 설문을 구성하였다.

PISA의 설문을 기초하여, ‘다른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우리 학교 선생님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 준다’, ‘우리 학교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행복에 관심이 많다’, ‘나는 학교에서 즐겁게 지낸다’, ‘학교에서의 생활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5개의 설문으로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IV-1> 강원도 내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 (단위 %)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른다)
친구 관계	20.1	63.8	12.2	3.9	
교사와의 소통	24.3	60.3	11.9	3.6	
교사의 학생행복 관심	17.5	41.2	12.3	4.8	24.2
즐거운 학교생활	35.2	53.8	8.2	2.8	
자기성장과 학교	28.9	57.7	9.9	3.5	

* 학생들의 학교 내 교사와 친구 관계에서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교사들이 학생들의 행복에 관심이 있는가에 대하여 24.2%나 되는 학생이 잘 모른다고 답변하여 확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알 수 있으며, 입체적으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인권 요소들을 파악해 보는 통으로 활용하였다. 이에 학교생활만족도와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학교생활만족도와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 설문을 중심으로 다각도의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9) OECD는 가입국 대상으로 한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ISA)를 매년 시행중이며, 본 조사에서는 PISA 설문지중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관련 항목을 인용하여 ‘학교생활만족도’ 설문을 구성하였다.

1. 학생인권요소¹⁰⁾와의 관계성

“학생인권보장 정도 높을수록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 높아”

학생설문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는 아래의 <표 IV-2>와 같이 대부분의 학생인권요소들과의 관계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2> 학교생활만족도(PISA)와 학생인권요소와의 관계¹¹⁾

구분	성적 차별	가정 차별	수업 선택	개성 실현	성적 공개	각서 강요	학생회	동아리
PISA	.403	.339	.230	.164	.241	.251	.257	.149
구분	학생 신품	학생 언폭	따돌림	교사 체벌	교사 언폭	가정 신품	가정 언폭	
PISA	.116	.137	.150	.190	.199	.105	.182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는 요소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강원도 내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는 차별 관련 요소와 밀접한 연동성을 나타내며, 특히 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에서 그 강도가 높게 나타난다. 여기에 ‘가정형편을 이유로 한 차별’, ‘성적 공개’, ‘각서 등의 강요’와도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요소는 학생들의 자존감에 연관된 요소로서, 자존감이 상처받게 되면 학교생활에서 만족을 느끼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학교공동체의 폭력 요소와의 관련성을 분석해보면, 학생 간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의 요소가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와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더 유의해서 보아야 할 점은 교사의 체벌이나 언어폭력이 학생간의 폭력요소보다 더 큰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즉 친구 관계에서의 폭력보다 교사에 의한 체벌이나 언어

폭력이 훨씬 더 학생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의 폭력에 노출된 경우 학교생활만족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업선택권, 개성실현의 자유 등과의 관계성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인격적 주체로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결정과 선택을 할 권리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상식적인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학생회 운영과 동아리 활동 항목은 교내 소통의 문화와 관련된 요소인데, 이 역시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보였다. 즉 이들 요소는 학생간의 소통과 교사와의 소통을 포함한 학교 내 전반적인 소통의 문화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가 학교 내 소통과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2.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평가와의 관계

학생설문 분석 결과,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인권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만족도 높을수록 학생인권보장제도에 대한 신뢰 높아”

설문에 학생들이 적어 낸 기타 의견 중 학생인권보장제도에 의하여 자신들의 인권이 보장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학생들이 직면한 학생인권보장의 수준이 열악한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조례의 학생인권보장성에 대한 평가와의 관계성에서 학교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의 평가가 높은 이유가 설명될 수 있다. 즉 학교에서 자신의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 학생일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높고 제도에 의한 인권보장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표 IV-3> 학교생활만족도(PISA)와 학생인권조례의 학생인권보장성 등

구분	조례의 인권보장성	헌법 등의 학생인권보장 규정
학교생활만족도(PISA)	.243	.131

10) 학생 설문지의 5개 분류중 ‘학생들의 기본권 권리 보장’과 ‘폭력’ 관련 설문에서의 구성 요소들이 학생인권요소에 해당한다.

11) 본 설문에 사용된 상관관계는 척도형 사회통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Pearson 상관계수를 사용하였다.

상관계수는 -1 ~ 1의 값을 가지는데, 절대값이 높을수록 상관관계가 높으며, 0이면 관계성이 거의 없음을 나타낸다. 부호는 서로간의 관계가 순관계인지 역관계인지를 보여주며, 대략적으로 사회통계에서는 절대값이 0.1이상이면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0.2이상이면 관계가 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본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학생들의 이와 같은 태도는 다만 학생인권보장제도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학교생활에서의 인권문화와 그 제도에 대한 학습과 훈련이 향후 사회에 진출할 학생들의 사회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즉 학생인권의 보장은 학생들이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대목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3. 수면시간, 가족 시간과의 관련성

학교생활만족도는 학생들의 평균수면시간과 비례적 상관관계를 가지며, 가족과의 시간과도 비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학교생활만족도(PISA)와 수면시간 및 가족과의 시간

구분	수면 시간	가족과의 시간
학교생활만족도(PISA)	.205	.189

“가정의 지지 부족한 환경의 학생에 대한 지원 필요”

가족과의 시간은 결국 그 학생의 가족생활에서의 행복도 및 가정의 지지 정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요소가 학교생활의 만족도와 같은 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은 가정의 지지를 충분히 얻을 수 없는 환경의 학생들에 대해 보다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생활만족도 낮은 학생은 수면시간도 짧은 경향”

또한 수면시간과 관련하여는 이 요소는 건강과도 직결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교육행정 당국과 학교는 학생들의 적절한 수면시간의 보장을 위한 필요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2절 차별

1. 차별문화, 차별감수성 격차

이번 설문결과에서 여러 면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차별과 관련한 설문결과이다.¹²⁾ 먼저 앞의 <표 IV-2>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는 학교 내 차별의 문제와 가장 깊은 관련성이 있었다. 특히 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의 문제는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한 차별보다 한층 강하게 학교생활만족도와 결합되어 있으며,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함께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의 대표적인 요인이었다.

<표 IV-5> 학교생활만족도와 학생차별 요인 간의 상관표

구분	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	가정형편을 이유로 한 차별
학교생활만족도(PISA)	.403	.339

“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을 중심으로 학교 내 차별의 문화”

또한 이러한 ‘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이 대부분의 학생인권 요소와 연결되어 차별의 문제가 학교공동체 내에서 하나의 고리를 이루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차별 감수성의 격차 해소 위한 프로그램 필요”

한편, 학교에서의 차별에 대한 학생과 보호자의 체감 정도는 비슷하게 나타나는 반면, 교사 및 학교장의 체감 정도는 크게 둔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공동체 내 주체별 학교 내 차별에 대한 체감정도의 차이는 심각한 수준으로, 이를 해결하기

12) 참고로 2013년 참교육연구소의 [전국 학생생활 실태조사보고서] 중 최근 1년간 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에 대한 경험이나 목격을 묻는 학생설문에 대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전국대비 강원도의 경우 성적에 의한 차별의 양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위 %)

-1년간 성적 차별 경험-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전국	12.8	34.2	31.0	22.0
강원도	16.5	41.8	30.8	11.0

위해서는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 IV-6> 차별 없이 공정한지에 대한 주체별 설문결과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점수
성적	학생	6.7	18.2	48.9	26.2	65.0
	보호자	0.9	13.0	68.0	18.1	67.9
	교사	0.0	2.6	51.2	46.2	81.4
	학교장	0.0	0.7	43.9	55.4	85.1
가정 형편	학생	3.4	5.8	52.3	38.5	75.4
	보호자	0.5	8.3	69.9	21.2	70.8
	교사	0.1	0.9	41.2	57.8	85.7
	학교장	0.0	0.2	37.3	62.5	87.5

2. 학생인권요소의 핵심적 고리로서의 차별

1) 차별과 여타 학생인권요소와의 상관성

학생, 교사, 학교장의 설문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 차별, 특히 '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의 문제는 성적 공개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등 제반 학생인권요소와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다른 학생인권 요소들도 서로 상관성을 가지기는 하나, '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의 경우 그 정도가 매우 강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요소들과 관계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였다.

<표 IV-7> 차별과 다른 학생인권요인의 상관관계

	수업 선택권	개성 실현권	성적 공개	각서등 강요	학생회	결정 참여권	동아리	학생 폭력	교사 체벌	교사 언폭	
성적차별	학생	.340	.304	.302	.312	.266	.237	.240	.055	.204	.251
	교사	.063	.249		.195	.254	.172	.194	.097	.074	
	학교장	.020	.250		.230	.260	.140	.220	.210	.150	
가정차별	학생	.298	.234	.206	.258	.303	.196	.222	.066	.138	.188
	교사	.050	.253		.183	.281	.181	.160	.100	.060	
	학교장	.030	.250		.210	.260	.130	.190	.210	.180	

"차별의 경험이 많을수록 자유권 보장 수준도 낮아"

구체적으로 보면, 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 등은 방과 후 수업 선택권, 성적 공개, 개성 실현의 자유, 각서 강요 등의 문제와 깊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즉, 차별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학생일수록 자유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답하였다.

"학교 내 소통이 어려울수록, 폭력 문화가 많을수록 차별의 경향 짙어"

또한 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은 학생회 운영, 학생들의 학교의 주요 결정 참여, 동아리 활동 등 학교 내 소통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들과도 관련성이 높으며, 교사의 신체적 체벌 및 폭언의 경험 등과도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즉, 차별과 소통 문화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의 문제 또한 차별과 연동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교사 직무피로도(MBI) 요소 등과의 상관관계

교사설문 결과에서는 성적 차별이 있다고 답변한 교사의 상당수가, 해당 학교 교사들의 학생 행복에 대한 관심도가 낮고 교사의 학생에 대한 경청도도 낮은 등 교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답하였다.

또한 교사의 피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학교장의 교사의견 경청, 교사의 학생인권 주체로의 인정, 교사의 학교운영 참여 등과 같은 교사의 직무피로도에 관련된 요소¹³⁾가 학교 내 차별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차별이 학생인권요소 전반에 걸쳐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학교의 학생인권요소 전반에 교사의 직무피로도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V-8> 차별과 교사 피로도(MBI) 등과의 관계

	MBI	교사경청	행복관심	학교장경청	경청실현	교사주체	교사참여	참여실현
성적 차별	.198	.351	.314	.262	.179	.280	.238	.227
가정 차별	.167	.364	.319	.288	.203	.307	.311	.228

13) 이에 대하여는 본 장의 제5절에서 자세히 정리하고 있다.

3) 학교장의 교사에 대한 신뢰도와의 상관관계

학교장 설문결과 학교장의 교사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학교 내 차별의 문제가 적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장과 교사간의 신뢰관계가 결국 학교 내 인권적 문화의 정착과 영향관계에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표 IV-9> 차별과 학교장의 교사의 신뢰도

학교장	교사 열정	교사 자부심	교사 연구	교사 눈높이
성적 차별	0.32	0.27	0.21	0.29
가정 차별	0.33	0.27	0.21	0.24

3. 학교규모 등에 따른 성적 차별의 양상

“대도시 소재 대규모 학교의 성적 차별”

성적 부담이 있는 인문계고와 중학교를 중심으로 성적 차별적 요소가 학교 크기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강원도의 경우, 실제 규모가 큰 학교는 대부분 입시 스트레스와 학교 간 경쟁이 과열되기 쉬운 주요 도시에 소재하고 있어서, 도시와 지역 간의 차이일 수도 있으므로 향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조사가 필요하다.¹⁴⁾

또한 집단면접조사시 일부 확인된 바로는 평준화 과정에서 학교공동체가 겪는 과도적 갈등이 성적 차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향후 평준화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 추이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

“기숙사 운영 학교의 성적 차별 등 학생인권 실태 심층 조사 필요”

한편, 학생들이 기타의견란에 기재한 내용¹⁵⁾ 및 중간보고회 당시 참석한 교사들 의견¹⁶⁾에 의하면, 강원도의 경우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안에서의 성적에 의한 차

14) 이번에 학생들이 이용한 온라인 설문 시스템에는 학교 코드 등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설문에 응한 학생의 학교 소재지가 대도시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15) 학생들의 의견에는 다만 차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인권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있었다.

16) 강원도 비평준화 지역에는 도교육청 및 지자체가 지원하여 학교 내에 “생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성적 상위 순으로 입사

별의 문제가 더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 향후 이에 대한 별도의 조사와 분석, 정책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 IV-10> ‘학교와 선생님은 성적과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하는가’ (단위 %)

학생설문	학교규모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점수
초등학교	전체	6.7	18.0	48.8	26.5	65.1
	30명 미만	3.2	7.3	39.6	49.9	78.8
	30명~100명	2.9	5.9	40.5	50.7	79.8
	100명 이상	4.7	8.1	44.0	43.2	75.4
중학교	전체	3.6	7.1	41.3	48.0	78.0
	30명 미만	4.7	15.1	56.1	24.1	66.6
	30명~100명	7.4	21.3	55.6	15.7	60.0
	100명 이상	8.0	22.9	56.4	12.8	58.1
인문계고	전체	7.0	20.6	56.1	16.2	60.6
	30명 미만	10.0	25.1	55.0	10.0	55.1
	30명~100명	10.2	31.7	51.5	6.7	51.6
	100명 이상	11.0	32.8	49.9	6.4	50.6
	전체	10.6	31.4	51.0	6.9	51.5

<표 IV-11> 학교 구성요소와 차별의 상관관계

구 분	학교급	지역	총학생수	교사당학생수
성적공정	교사	-0.15	-0.02	-0.08
	학교장	-0.11	-0.08	-0.12
가정공정	교사	-0.16	-0.03	-0.09
	학교장	-0.10	-0.02	-0.10

제3절 학교 폭력 등

1. 전국 단위 조사와 비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를 참조해 보면,¹⁷⁾ 강원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적이 공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정책이 차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Ⅲ, 2013, 94쪽, 95쪽, 97쪽 참조.

도 내 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경험 빈도는 전국 학생의 평균 빈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다소 낮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¹⁸⁾

특히 학생간 폭력은 전국 대비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교사와 가정에서의 체벌이나 언어폭력의 경우는 전국 대비하여 매우 큰 차로 빈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학생들의 폭력 경험 적어, 학생인권 정착에 유리한 토대”

<표 IV-12> 폭력 관련 학생설문 결과 비교표 (단위 %)

비 고	없다	년 1~2회	월 1~2회	주 1~2회	주 3회 이상	점수	
학생 간 신체 폭력	전국	92.8	4.2	1.3	0.8	0.9	96.8
	강원도	92.7	4.0	1.6	0.7	1.0	96.7
학생 간 언어 폭력	전국	83.5	9.8	3.4	1.6	1.8	93.0
	강원도	87.9	7.3	2.3	1.1	1.4	94.8
따돌림	전국	93.6	4.1	1.0	0.6	0.7	97.3
	강원도	94.0	3.5	0.8	0.7	0.9	97.3
교사 신체체벌	전국	70.2	14.2	9.0	4.2	2.3	86.4
	강원도	78.9	10.5	5.5	3.5	1.7	90.3
교사 언어폭력	전국	72.7	13.4	7.2	3.8	2.9	87.3
	강원도	84.0	8.4	3.4	2.4	1.7	92.7
가정 신체체벌	전국	69.4	22.3	6.1	1.5	0.7	89.6
	강원도	79.3	14.9	3.9	1.1	0.8	92.7
가정 언어폭력	전국	65.9	18.0	9.2	3.9	3.0	85.0
	강원도	81.7	10.4	4.1	2.1	1.7	92.0

이에 강원도 내 학교의 경우 학생인권문화 정착에 있어 가장 중요하면서도 심각한 폭력의 문제와의 갈등이 적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학생인권의 토대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른 지역의 경우, 폭력이 학생인권요소의 중요한 고리인 반면, 강원도의 경우는 차별이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교구성 사항 등과 폭력

학교 유형이나 행정지역, 학교 규모 및 교사 1인당 학생 수와의 관계성도 강한 것으로

18) 참교육연구소, ‘전국 학생생활 실태조사보고서, 2013’의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로 나타나고 있다. 즉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순으로, 그리고 학교규모가 클수록,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을수록, 교사의 체벌뿐만 아니라 학생 간 폭력 및 집단따돌림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집단면접조사에서 이와 유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학교 규모가 작은 학교 보다는 큰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생 수가 적고 인적 네트워크가 잘 형성된 학교의 학생들은 학교 폭력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느끼는 반면, 학교 규모가 큰 경우 학생들은 학교 폭력이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를 강화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IV-13> 학교 구성 사항 등과 학교 폭력의 관계

구분	학교급	지역	총학생수	교사당 학생수
학생간 폭력	교사	0.22	0.21	0.34
	교장	0.33	0.22	0.36
따돌림	교사	0.08	0.16	0.25
	교장	0.14	0.16	0.22
체벌	교사	0.16	0.06	0.16
	교장	0.13	0.04	0.13

<표 IV-14> 학교규모별 학교폭력과의 상관관계 – 교사

교사	초등학교	중학교	인문계고	특성화고
학생간 폭력	-0.50	-0.61	-0.02	-0.60
따돌림	-0.55	-0.38	-0.13	-0.32
체벌	-0.05	-0.29	-0.28	-0.07

* 위 수치는 학교규모와 폭력요소와의 상관관계이며, 폭력의 빈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 음수가 커질수록, 학교규모가 클수록 해당 학교 급에서의 폭력 요소가 증가하는 정도와 상관관계가 큼.

또한 학교 내 폭력에 대한 응답을 학교규모에 대한 사항과 연관해 분석해 본 결과, 학생 간 폭력이나 따돌림의 경우와는 큰 상관성이 없었으나, 교사의 체벌이나 언어폭력과는 학교규모가 클수록 폭력의 빈도가 높아지는 상관이 나타났다.

<표 IV-15> 학교규모와 교사의 체벌-학생

(단위 : %)

구분	없음	일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에 1~2회	일주에 3회이상
전체	79.2	10.4	5.3	3.4	1.6
학교 규모	-30명	81.7	8.5	5.5	1.2
	30명-100명	81.1	10.6	4.4	2.6
	100명이상	76.5	11.4	5.9	4.1
					2.1

<표 IV-16> 학교규모와 교사의 언어폭력-학생

(단위 %)

구분	없음	일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에 1~2회	일주에 3회이상
전체	79.2	10.4	5.3	3.4	1.6
학교 규모	-30명	81.7	8.5	5.5	1.2
	30명-100명	81.1	10.6	4.4	2.6
	100명이상	76.5	11.4	5.9	4.1
					2.1

3. 폭력은 문화의 문제

“교육공동체 내 폭력, 문화적 개선 필요”

폭력과 관련한 설문결과를 보면 학생, 교사, 학교장의 경우 모두 학생 간 폭력, 체벌, 가정 폭력 등의 문제가 서로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력이 하나의 문화를 이루며 양산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의 학생에 대한 지원 필요”

또한 학생설문 결과에서 특별히 드러난 부분은 학교에서의 폭력(학생, 교사에 의한)에 노출된 학생들이 가정에서의 폭력에도 노출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표 IV-17> 폭력 요인간의 상관표 - 학생

학생	학생신폭	학생언폭	따돌림	교사체벌	교사언폭	가정체벌	가정언폭
학생간 신체폭력	1	.547	.425	.187	.205	.210	.180
학생간 언어폭력		1	.482	.222	.228	.228	.212
따돌림			1	.169	.166	.203	.157
교사의 체벌				1	.526	.212	.210
교사의 언어폭력					1	.196	.233
가정체벌						1	.536

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경험 답변율을 가정형태 등과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운동선수 학생, 한부모 가정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장애인 학생, 조부모 가정 학생이 상대적으로 폭력에 대한 경험치가 높은 특성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학교 폭력 예방 정책의 마련에 있어 가정을 교육공동체 안의 주요 구성요소로 간주해야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표 IV-18> 가정형태와 학생간 신체 폭력 - 학생

(단위 %)

구분	없음	일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에 1~2회	일주에 3회이상
가족 유형	운동선수	84.3	6.7	5.5	1.7
	한부모	91.3	5.1	1.6	1.2
	다문화	85.6	6.7	3.6	0.5
	장애인	78.7	1.6	14.8	0.0
	조부모	87.7	4.7	3.4	2.1
	일반	93.8	3.7	1.2	0.5

<표 IV-19> 가정형태와 학생간 언어폭력 - 학생

(단위 %)

구분	없음	일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에 1~2회	일주에 3회이상	전체(N)
가족유형	운동선수	81.2	7.4	4.8	2.6	4.0
	한부모	85.9	8.5	3.3	0.8	1.6
	다문화	84.5	9.3	3.1	2.1	1.0
	장애인	73.8	8.2	11.5	0.0	6.6
	조부모	80.4	11.9	2.1	2.1	3.4
	일반	88.9	7.0	1.9	1.0	1.2

<표 IV-20> 가정형태와 집단 따돌림 - 학생

(단위 %)

구분	없음	일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일주에 1~2회	일주에 3회이상
가족유형	운동선수	91.9	3.6	1.4	1.7
	한부모	93.1	4.0	0.8	1.2
	다문화	91.8	4.1	1.5	1.0
	장애인	78.7	1.6	9.8	0.0
	조부모	90.6	5.5	1.7	1.3
	일반	94.5	3.4	0.7	0.5

4. 폭력과 학교인권문화

학생의 설문 결과를 보면, '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과 교사에 의한 체벌 및 폭언의 경험의 상관성이 확인되고 있는데, 교사의 체벌과 배경에는 성적에 의한 차별의 문제가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각서 강요 등의 문제도 함께 연동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양심의 자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체벌 및 언어폭력 등의 문제와 함께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인격권에 대한 위협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표 IV-21> 폭력과 여타 학생인권요인과의 관계 - 학생

학생	성적 차별	가정 차별	수업 선택	개성 실현	성적 공개	각서 강요	학생회	결정 참여	수업 방해	동아리
학생신폭	.055	.099	.055	.009	.023	.085	.050	.052	.030	.027
학생언폭	.066	.101	.059	.034	.045	.104	.037	.070	.049	.038
따돌림	.039	.082	.051	.002	.017	.066	.040	.040	.029	.016
교사신폭	.204	.138	.149	.139	.190	.248	.111	.132	.155	.116
교사언폭	.251	.188	.173	.138	.195	.247	.130	.147	.129	.115
가정신폭	.050	.044	.086	.005	.008	.109	.004	.029	.030	.014
가정언폭	.122	.089	.090	.057	.065	.129	.040	.037	.031	.02

교사 설문 결과를 보면, 학교장의 경우보다는 정도가 약하나, 학생 간 폭력, 따돌림, 교사의 체벌 등의 문제가 수업선택권, 개성실현의 자유, 각서 등 강요, 동아리 활동, 교사와 학생 간 소통, 교사의 학생 행복 관심도, 학교장의 교사 의견 경청도, 교사의 학교운영 참여 가능성, 수업량,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의 요소와 상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2> 폭력과 여타 학생인권요인과의 관계 - 교사

교사	수업 선택	개성 실현	각서 강요	동아리	학생 폭력	따돌림	체벌	교사 경청	행복 관심	경청 실현	참여 실현	소통 부재	수업 과다	수업 방해
학생 폭력	.149	.225	.177	.053	1	.522	.332	.164	.149	.119	.175	.182	.183	.217
따돌림	0.03	.172	.167	.105	.522	1	.298	.126	.157	.126	.163	.155	.134	.141
체벌	.100	.147	.147	.135	.332	.298	1	.125	.177	.166	.158	.145	.082	.162

한편 학교장 설문에서의 폭력관련 응답과 다른 설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차별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의 다른 요인과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IV-23> 폭력과 여타 학생인권요인과의 관계 - 학교장

학교장	수업 방해	성적 공정	가정 공정	수업 선택	각서 강요	학생 폭력	따돌림	체벌
학생 폭력	0.29	0.21	0.21	0.21	0.30	1	0.56	0.31
따돌림	0.15	0.12	0.15	0.13	0.19	0.56	1	0.30
체벌	0.09	0.15	0.18	0.12	0.18	0.31	0.30	1

제4절 자유권 및 학생자치 등

1. 방과 후 수업 선택의 자유

"전국 대비 양호한 수준"

"그러나 아직 절대적으로 제한이 많고, 학생과 학교 측의 감수성 격차 있어"

아침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방학 보충수업 등의 방과 후 수업 참가 선택권 설문에 대한 학생, 보호자, 교사, 학교장의 설문결과를 비교하면 아래 <표 IV-24>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주체별로는 학교장 > 교사 > 보호자 > 학생 순으로 선택권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학생의 선택권 측면에서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학교설립 유형별로 보면 사립학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제한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안 마련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부분의 설문결과와 마찬가지로 수업 선택권 보장의 수준에 대한 평가가 학교장>교사>보호자>학생의 순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그 격차 또한 매우 크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는 이 문제에 대한 학생과 교사, 학교장의 감수성의 차이가 크다는 의미이므로 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좀 더 면밀한 분석과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표 IV-24> 방과 후 수업 선택권 보장 여부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점수
학생	18.1	23.4	45.8	12.8	51.2
전국※	28.7	23.1	36.1	12.1	43.9
보호자	2.2	15.2	68.3	14.3	65.1
교사	1.8	10.7	53.4	34.1	73.4
학교장	0.0	2.1	31.9	66.0	88.1

※ 전국 통계: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료.

<표 IV-25> 설립유형별 방과 후 수업 선택권 보장 추이-학생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설립 유형				
국공립 사립	17.6 23.1	23.4 20.6	45.7 42.6	12.8 13.8

2. 개성실현의 자유

“일반적 자유권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

“향후 진전된 개성 발현권 등 보장 모색해야”

2013년 실시된 전국단위의 학생설문 조사결과에서는 강원도 내 학교의 경우 두발 길이의 단속, 휴대폰 소지나 소지품 검사의 문제 등 일반적 요소들은 전국 평균 수치를 크게 앞서는 보장 수준을 나타냈다.¹⁹⁾

즉 강원도의 경우 개성실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학교의 규제가 적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개성실현을 보장하는 다양한 정책을 통

19) 2013년 참교육연구소의 ‘전국 학생생활 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강원도는 비교적 머리길이에 대한 규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소지 금지 등에 있어서는 전국대비 상당한 수준으로 갈등이 해소된 것으로 보이나, 기타 용모에 대한 규제 등은 다소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머리모양이나 색깔에 대한 규제가 있다에 대한 설문 결과>

(단위 %)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국	57.7	18.3	7.9	16.1
강원도	71.1	22.2	4.4	2.2
<양말, 외투 등 옷에 대해 학교에서 간섭하는 것에 대한 설문 결과>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전국	31.4	21.3	18.2	29.2
강원도	24.2	41.8	16.5	17.6

해 자유권 및 개성실현 부문에서의 모범사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좀 더 진전된 개성실현의 자유 보장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아래 <표 IV-26>가 보여주듯이 개성발현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주체별 기준이 많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성세대의 개성발현권의 상상력이 단편적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개성발현권이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저변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다양한 인권교육과 교육공동체 내의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 등의 과정을 통해 이러한 차이가 좁혀질 것으로 본다.

<표 IV-26> 개성실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각 주체별 설문결과 비교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르겠다	점수
학생	14.6	20.4	36.1	12.6	16.2	47.4
보호자	1.7	16.3	60.8	17.8	3.4	69.1
교사	0.5	15.0	41.4	42.5	0.6	77.6
학교장	0.0	6.5	35.6	57.2	0.7	83.5

3. 성적 공개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적공개의 빈도에 대한 설문에서 전국대비 강원도의 성적 공개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교사들의 경우 학생들이 체감하는 것과 다르게 비의도적 성적 공개, 불가피한 성적 공개하는 입장은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NEIS에 기재되는 성적을 본인에게 확인시키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의 성적을 보게 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여 학생들의 감수성과 차이가 있었다.

상관관계 분석에 확인되듯이 성적에 의한 차별문제와 함께 강원도 내 학교의 인권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향후 별도의 심층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 IV-27> 성적 공개에 대한 학생 설문 결과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강원도	24.3	40.2	28.2	7.3
전국 ²⁰⁾	40.7	30.3	20.8	8.3

성적 공개 여부는 예상할 수 있듯이 성적에 의한 차별의 문제와 강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성적 공개가 있을수록 개성실현의 자유는 위축되고, 각서 강요의 빈도가 높고 수면시간은 적어지는 경향성이 확인된다.

<표 IV-28> 성적공개와 타 요소와의 상관관계

(단위 %)

학생	PISA	성적차별	가정차별	개성실현	각서강요	수면시간	학생회	수업방해	동아리
성적공개	.241	.302	.206	.211	.322	.208	.141	.149	.168

학교설립유형별 비교에서는 국공립에 비해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성적 공개로 인한 문제를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9> 설립유형별 답변율 분석

(단위 %)

설립유형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국공립	26.0	40.1	27.1	6.8
사립	12.8	38.9	39.1	9.2

4. 각서, 반성문 등의 강요

사회적으로 학생인권의 담론이 확산되면서, 학생인권조례의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전 체적으로 체벌을 통한 학생지도가 지양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들이 효과적인 교육과 학생지도를 위한 대체 방안을 찾지 못하여 교육현장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린마일리지 제도나 자치법정 등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은 이러한 제도가 적합한 학생인권지도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또 많은 경우 별의 의미로 반성문 등을 작성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학생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러한 반성문 등을 작성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

20)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실태조사결임. 참고: 2013년 참교육연구소의 조사결과에서도 아래와 같이 강원도의 성적 공개 빈번함을 보여준다.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전국	15.4	22.9	27.9	33.8
강원도	28.6	30.8	23.1	17.6

고, 아울러 반성문 강요가 과연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반성문이나 각서 등의 작성은 강요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인격적 주체성이 부정당하는 경험이 된다는 점에서 인권적 고려가 필요하다.

자기의사에 반하는 반성문이나 각서 작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교육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며, 구성원간 인식의 차이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30> 의사에 반하는 각서나 반성문 등의 강요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점수
학생	32.1	43.4	19.7	4.8	67.7
보호자	26.6	55.2	16.5	0.9	72.5
교사	23.9	53.4	19.1	1.6	69.7
학교장	40.1	45.2	14.2	0.4	75.1

5. 학생 자치

설문 조사 결과, 강원도 내 전반적으로 학생자치가 구현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인 학생회의 존재와 의사결정 과정에의 학생 참여 구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교장에 대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교내 의사결정 과정 참여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학생자치의 모범적 사례 발굴, 선례로 제시해 견인할 필요”

또한 집단면접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자치기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나, 학생자치가 잘 자리 잡고 있는 모범사례도 발견되었다. 각 모델에 대한 분석을 학생자치 정책에 참고하면 향후 강원도 내 학교의 학생자치가 전국적인 선례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²¹⁾

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Ⅲ, 2013, 117쪽을 참조하면 비슷한 설문에서 전국 학생 답변 평균 수치를 보면 강원도의 경우에 비해 낮은 수준의 경향성을 볼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8.2	27.2	42.7	11.9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자치가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일수록 차별의 문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외의 수업선택권, 성적공개, 각서강요, 동아리 활동 등과도 일정정도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 학생자치와 다른 요인과의 상관관계

학교 유형	P I S A	가족 시간	성적 차별	가정 차별	수업 선택	개성 실현	성적 공개	각서 강요	수업 방해	동아리	수면 시간	교사 심리	교사 업무	
학생회 운영	.230	.257	.149	.266	.303	.168	.158	.141	.149	.117	.184	.174	.111	.130
학교 결정 참여	.239	.074	.083	.237	.196	.215	.295	.153	.131	.122	.276	.192	.132	.147

또한 면접조사 결과,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한 학교나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나 집단 따돌림도 적은 경향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학생자치 등이 학교의 인권문화 정착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의 의사결정과정에 학생들의 참여 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2> 설립유형별 학생참여도 (단위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른다
설립	국공립	6.1	12.2	40.7	11.5
유형	사립	11.5	18.4	39.7	8.0
				22.4	

제5절 교사의 직무피로도(MBI)와 학생인권

교사의 직무피로도는 여러 다른 요소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인문계고, 특성화고 순으로 피로도의 절대 값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3> 교사의 직무피로도(MBI)와 학생인권요소 등과의 관계

학교급	유엔아동 권리	인권보장	교육기본권	성적공정	가정공정	개성실현	각서강요	학생회	학생폭력	따돌림	교사경청	행복관심	학교장경청
	.162	.148	.120	.163	.198	.167	.155	.135	.107	.157	.126	.213	.204
경청	교사주체	주체실현	교사참여	참여실현	과도행정	현장이해	교육마인드	소통부재	수업과다	예산부족	부모간섭	가정지지	수업방해
	.162	.178	.293	.158	.292	.191	.155	.220	.271	.220	.119	.193	.224

설문들을 분야별로 묶어 살펴보면, 먼저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교사일수록 직무피로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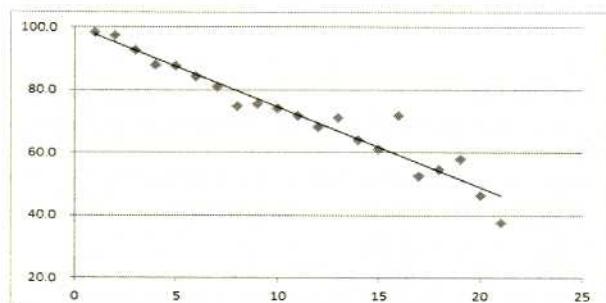
“학생인권 보장 증진 위해 교사의 피로도 개선해야”

학생인권의 주요 요소로 나타난 차별 요소는 교사의 직무피로도와 상당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차별요소가 강할수록 교사의 직무피로도가 높아졌다. 이외에도 개성실현의 자유의 보장 수준과 교사의 학생의 의견 경청도 및 학생 행복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학생회 운영이 활발할수록 교사의 피로도가 낮고, 각서 등의 강요와 학생 간 폭력, 따돌림의 경우 교사의 직무피로도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성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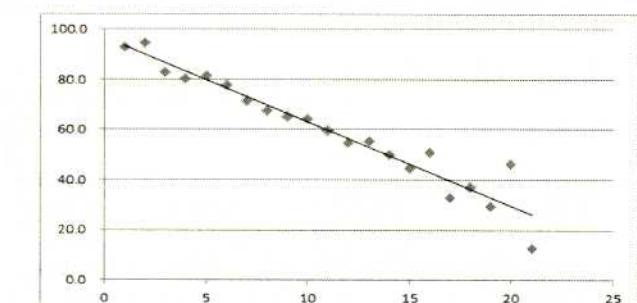
“교사의 학교 내 소통과 존중, 학생인권 주체 인정이 직무피로도 감소”

또한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학교장의 교사 의견 경청도, 교사의 인권주체성과 학교 운영에의 참여도와 교사의 직무피로도는 반비례의 관계로 나타났다.

<표 IV-34> 학교장의 경청도와 교사 피로도



<표 IV-35> 교사의 학생인권 주체성인정과 피로도



한편, 학교의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는 제반 요소들과 교사의 직무피로도는 같은 방향

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간섭이나 가정의 지지 부족, 학생의 수업방해가 교사 응답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교사의 직무피로도를 높인다고 보기는 어렵고 반대로 직무피로도가 높은 교사일수록 이 요소에 대한 체감이 큰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제6절 기타

1. 학생의 수면시간

수면시간과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수면시간은 가족시간 성적과 가정형편에 의한 차별 개성실현의 자유 보장 정도와도 관련성이 깊었다. 특히 수면시간이 성적에 의한 차별, 성적 공개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IV-36> 수면시간의 여타 요인과의 관계

학생	학교 유형	PISA	가족 시간	성적 차별	가정 차별	선택 수업	개성 실현	성적 공개	각서 강요	학생회 참여	결정 동아리	학교 규모	
수면 시간	.479	.205	.299	.284	.225	.157	.264	.208	.141	.174	.192	.185	.133

2. 가족과의 시간

가족과의 시간은 다음과 같이 가정형태에 따라 편차를 보이고 있다. 조부모와 한부모 학생들의 경우 절대적으로 가족과의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따라서 이를 학생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표 IV-37> 가정형태별 평균가족시간

(단위-시간)

가족시간	가정형태						평균
운동선수	한부모	다문화	장애인	조부모	해당없음	평균	평균가족시간
1.4	1.2	1.6	1.6	1.5	1.9	1.8	1.8

특이점은 가족과의 시간에 따라 차별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경험치가 높아진다는 점인데, 이는 앞의 가정형태와의 관련성도 있다.²²⁾ 통계 분석 결과 강원도의 경우 한부모, 조부모 가정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이들의 가족과의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표 IV-38> 차별과 가족시간

(단위-시간)

구분	성적차별없이 공정하다				가정형편에 상관없이 공정하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가족시간	1.4	1.6	1.8	2.1	0.7	0.5	1.8	2.9

<표 IV-39> 가족시간과 수면시간 및 학교설립유형

(단위-시간)

가족시간	수면시간					학교설립유형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7시간~	국공립	사립
평균가족시간	1.0	1.2	1.5	1.8	2.1	1.8	1.6

<표 IV-40> 가족시간과 가정에서의 폭력 등

(단위-시간)

가족시간	가정에서의 신체적인 벌					가정에서의 모욕적인 말(욕설)				
	없다	년1-2	월1-2	주1-2	주3-	없다	년1-2	월1-2	주1-2	주3-
평균가족시간	1.8	1.8	1.7	1.4	1.5	1.9	1.8	1.4	1.2	1.5

3. 학생들의 상담 창구

학생설문조사 결과, 중학생의 경우 다른 학교군의 학생들에 비하여 상담교사와의 상담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시기는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뤄줄 수 있는 상대와의 상담 욕구가 많은 시기임에도 60%가 넘는 학생이 친구와의 상담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민을 상담할 대상이 없다는 비율도 적지 않았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진학상담 외에 생활 상담을 전담할 전문상담교사의 배치가 필요

22) 가정형태에 따른 폭력의 경험빈도 차이에 대하여는 본장 제3절에서 설명하였다.

하다. 담임교사가 상담까지 맡기에는 교사의 절대 업무량이나 전문성 등의 문제에 비춰볼 때 적합하지 않다.

“학생들의 성장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교사의 안정적 배치 필요”

학교에서의 상담체계와 기반, 소통관계는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매우 중요하다. 그 일환으로 일선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전문적 상담교사가 안정적으로 확보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계약직의 불안정한 고용형태, 이에 따른 전문 상담교사의 안정적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 IV-41> 중학교 학생들의 가족형태별 상담 창구 (단위 %)

학교유형	친구상담	보호자상담	담임상담	상담	학원상담	기타상담	무상담
중학교	운동선수	29.4	18.7	13.1	14.0	4.7	11.2
	한부모	35.3	22.6	11.6	13.5	1.4	6.7
	다문화	31.3	26.5	16.9	9.6	1.2	3.6
	장애인	16.3	16.3	32.6	14.0	4.7	4.7
	조부모	34.3	21.1	15.4	16.6	0.0	5.7
	해당무	36.3	28.5	10.7	9.2	1.8	6.2
	전체	35.5	27.1	11.3	10.1	1.8	6.4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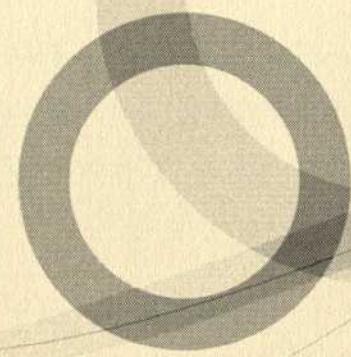
아래의 <표 IV-42>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의 지지가 부족하고, 폭력에의 노출이 상대적으로 큰 학생들에게는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이 더욱 필요하다.

<표 IV-42> 가정 형태 등과 학생들의 상담창구 - 학생 (단위 %)

가정 형태	친구상담	보호자상담	담임상담	상담선생님	학원상담	기타상담	무상담
가정 형태	운동선수	28.8	25.1	15.8	9.7	2.1	7.9
	한부모	34.4	26.9	13.8	9.1	1.8	6.1
	다문화	31.7	27.9	15.9	5.5	2.4	5.9
	장애인	23.6	24.5	24.5	11.3	2.8	5.7
	조부모	33.9	22.0	14.7	11.5	0.5	7.9
	해당무	34.1	31.9	12.3	6.9	1.9	6.0
	(단위 %)						

제7절 소결

1. 강원도 내 학교 학생들의 학교만족도는 대부분의 학생인권 요소와 깊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차별과 관련한 문제, 특히 성적 차별의 문제가 중심을 이루고 있음이 확인된다.
2. 성적 차별의 경우 학교 규모 등과 관계있으며, 평준화 지역에서는 평준화의 과도적 현상으로 인한 성적 차별 갈등이,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에서의 성적 차별이 문제화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과 학교 간의 차별 감수성에 대한 격차가 상당히 존재하는 점에 주목하여 향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한다.
3. 학교폭력 등에서 강원도의 경우 여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적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교사의 체벌과 가정에서의 체벌 등에 있어 큰 격차를 보이는 점은 강원도가 향후 학생인권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4. 학생 설문을 중심으로 판단하건대, 강원도 내 학교의 경우 자유권 부분과 관련하여는 두발 길이 제한 금지, 휴대폰 소지 금지 여부, 소지품 검사 유무, 방과 후 수업 선택권 보장 등 기본적 자유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국 대비 크게 안정된 추이를 보여준다. 다만 다양한 개성 발현권 등 좀 더 전진된 형태의 인권실현을 위해 학교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5. 학생 자치와 관련하여 일부 모범적인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이의 확산을 통해 강원도 내 학교 전반에 있어 학생자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6. 학생들의 가족과의 시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정의 지지가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 인권 취약 범주에 포함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7. 교육행정 당국의 학교 현장 이해와 행정업무 축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교육 활동 환경과 교사의 직무피로도를 개선하여 학생인권증진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8. 학생인권의 여러 요소들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인권문화를 형성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학생인권정책에 대한 고민에 있어 보다 입체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제 5 장
시사점 및 제안

제 5 장 시사점 및 제안

1. 강원도 내 학교 인권문화의 기초 확인 및 질적 성장 가능성

“기본권 인권부분에 있어 안정된 학교문화”

○ 이번 실태조사 결과 강원도 내 학교 전반에 걸쳐 인권문화의 기초 토대는 확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학생에 대한 설문답변 결과 학교 내 폭력, 체벌과 보충수업 등 선택권, 학생회 운영 여부, 두발 길이 제한과 휴대폰 소지 및 소지품 검사 등 학교공동체의 비폭력문화의 가능성과 기본적 자유권 보장 등 인권에 있어 비교적 안정된 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²³⁾

“인권문화의 확장성 필요”

○ 기본적 자유권 보장을 토대로 나아가 다양한 학교 인권문화의 형성을 위한 구성원들의 소통, 참여 그리고 인권감수성의 성장을 통한 인권문화의 확장과 구축이 가능한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 타 지역에 비해 강원도 내 학교의 학생회 운영이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심층면접 등에서 학생과 교사, 보호자 등 모든 학교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보다 실질적인 소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인권문화의 확장과 정착을 위한 시스템의 마련과 운영이 필요하다.

2. “모두가 행복한 강원교육”의 실현 중요성 확인

“학교생활만족도와 학생인권요소가 상호 연관되어 있어”

○ 강원도는 다른 시도 대비 학교 내 인권문화를 성장시키기에 적합한 조건을 확보하

23) 2013년 참교육연구소에서 실시한 전국단위 학생인권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강원도 내 학생들의 경우 휴대폰 소지 및 사용, 소지품 검사, 두발 길이 제한의 문제에 있어 거의 갈등이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고 있는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다음과 같은 접근을 통하여 도내 각급 학교가 강원도교육청이 지향하고 있는 “모두가 행복한 강원교육”의 실현에 더 한층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PISA 설문문항(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의 결과에 따르면, 학생인권의 모든 요소와 행복한 학교생활이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생활만족도는 학생들의 사회제도 신뢰도에 영향 있어”

○ 학생설문 분석 결과,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경우, 학생인권보장 제도가 자신들의 인권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기대치도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된다.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인권 보장에 대한 경험은 이들의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함양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3. 강원학교공동체의 핵심 고리 - 차별

“학교 인권문화 저해요인 - 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

○ 조사결과, 강원도 내 학교 문화에서는 ‘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의 문제가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성적 공개 문제를 비롯한 여타의 인권문화요소와 상당한 영향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설문결과를 분석한 결과, 성적 차별을 중심으로 수업 선택권, 개성 실현권, 성적 공개, 각서 등의 강요, 학생회 결정참여, 교사의 수업방해조치 방법, 동아리 활동, 수면시간, 교사 체벌이 연동되어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적을 이유로 한 차별은 학교규모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대도시일 수록 입시스트레스와 경쟁구조가 강한 환경에 처하는 만큼 대도시 소재 학교들에서 성적 차별의 문제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 또한 기숙사가 운영되는 일부 학교의 경우 차별을 비롯한 학생인권 전반에 대한 우

려가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별도의 조사 및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평준화 시행 2년 차를 맞아 성적 차별을 중심으로 한 갈등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비평준화 제도하에서의 성적 중심적인 문화가 잔존하는 과도적 문제로 판단되는바, 학교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행정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학교 폭력 - 인권문화 정착으로 해결”

○ 경기도 등 전국의 다른 지역의 경우, 학생인권요소의 핵심고리로 학교 폭력이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강원도의 경우는 학교 폭력으로 인한 갈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나지만, 차별에 이어 학생인권을 저해하는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또한, 학생 간 폭력, 학교와 가정에서의 체벌의 상관관계가 깊게 나타나고 있어, 폭력문화로서 자리하고 있다. 또한 학교 인권문화의 다른 여러 요인과의 상관성이 확인되었다.

- 학교 폭력은 학교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유기적 협력과 노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학교별 정책을 구성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예로서 UN 및 UNICEF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인권평화학교’와 같은 사업이 있다.
- 학교 폭력과 가정폭력의 노출이 비례적 상관관계로 나타나며, 이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폭력에 동시에 노출되는 취약 학생층이 존재함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러한 학생층에 대한 분석과 지원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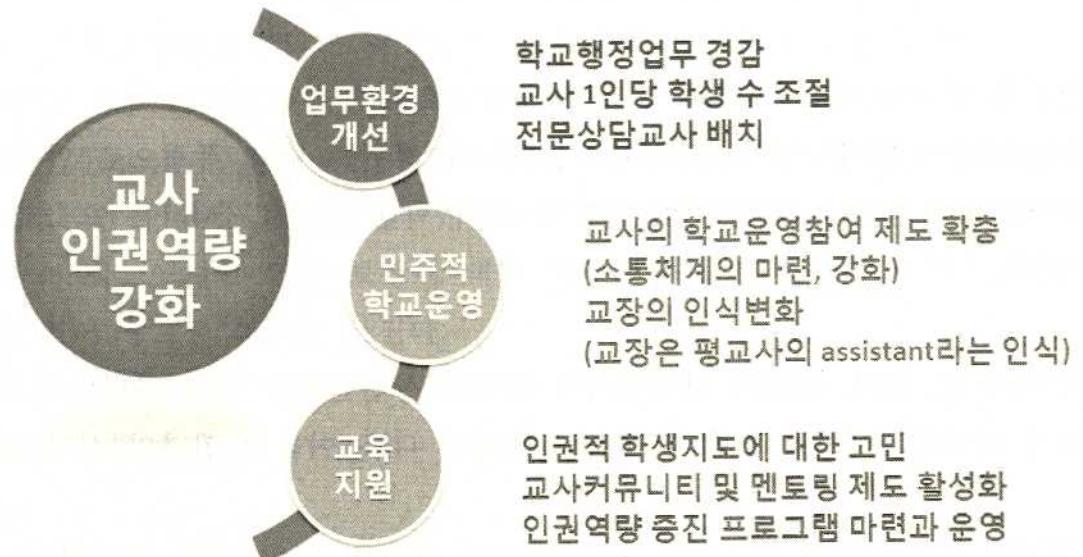
4. 인권의 주체로서 교사의 성장 지원 필요

“교사 직무피로도와 학교 인권문화의 관계”

○ 교사의 직무피로도는 교사의 학교운영 참여도, 학생과의 소통 등의 문제와 아주 강하게 결합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교사 직무피로도는 학교 인권문화

실현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즉 학교 인권문화의 한 축을 받치고 있는 교사의 직무피로도는 학생들의 인권 보장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교사의 직무피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그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5. 강원 교육공동체 인권역량 강화

- 집단면접조사 결과 교사와 보호자의 적지 않은 경우가 인권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학생인권의 확장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었다. 이는 인권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이해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인다.
- 따라서 강원도 내 학교의 인권문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모든 교육주체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교육 확대 등을 통한 인권역량의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 인권역량 강화와 제도적 뒷받침은 선후관계의 확충이 아닌 상보관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 강원도의 경우 인권 체계(조례)의 제도화 못지않게 인권교육을 통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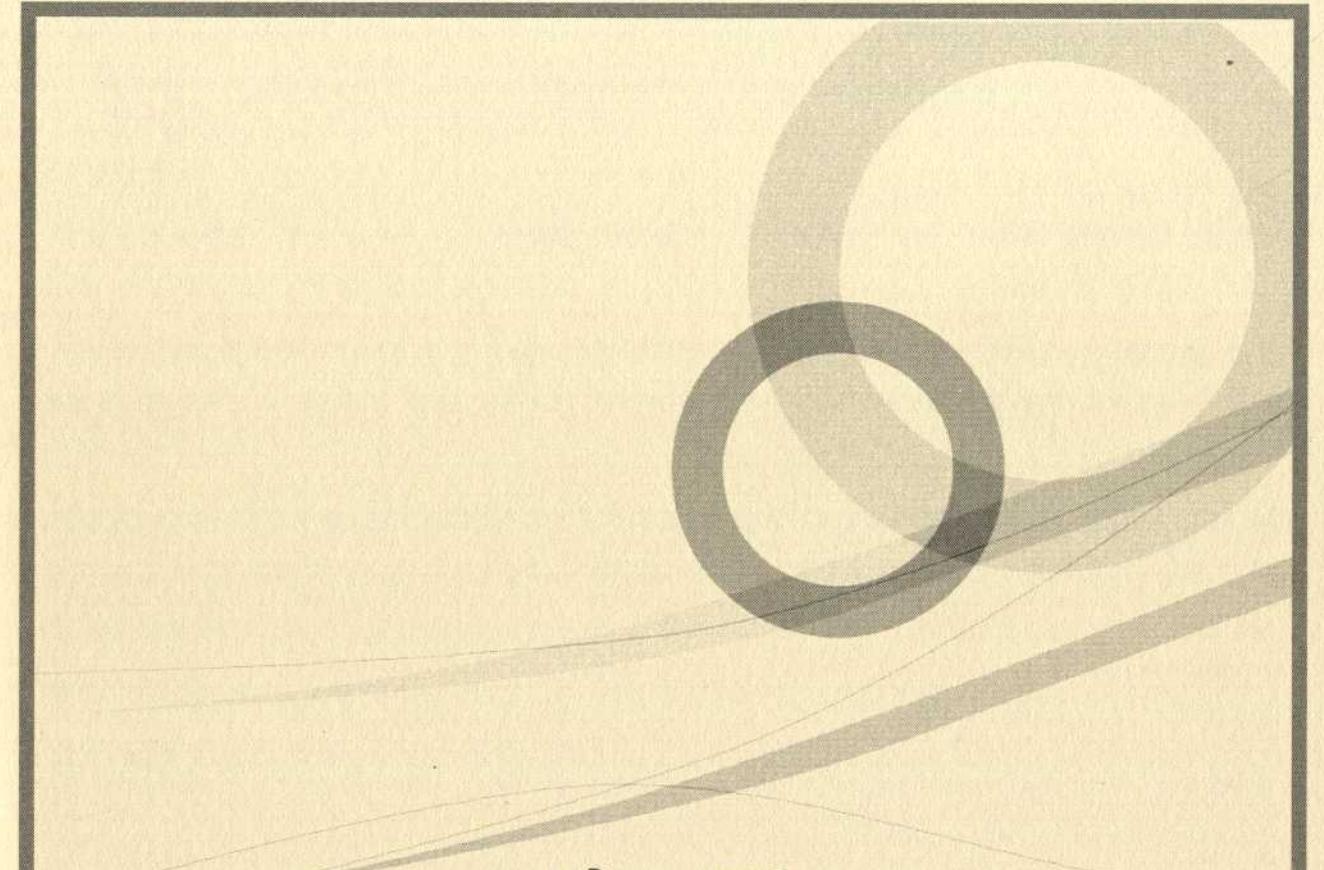
학교공동체의 인권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제도가 인권 역량을 견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권역량의 토대를 튼튼히 하는 노력에 기반을 둘 때 제도가 실효성을 갖는다.

“교육청의 교육 공동체에 대한 역량지원 방안 제안”

- 강원도 내 지역공동체 문화가 가지는 강점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가 함께 하는 인권프로그램을 통하여 각 주체가 인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 또한 학생들의 인권동아리, 교사들의 인권연구 모임 등 학생, 보호자, 교사, 학교장 각 주체별로 진행되는 인권활동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을 지원한다.
- 강원도교육청 내 직무연수 프로그램 중 인권연수 프로그램을 신설, 교사 및 교장의 인권역량 증진을 도모할 것을 제안한다.

6. 강원도 내 인권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한 인권역량 강화 제안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인권 성장을 위해서는 강원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강원도 내 인권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교육청외, 도내 인권교사 모임, 도내 인권 관련 조직(예: 강원대 로스쿨 인권법 모임, 도내 인권변호사 모임 등) 등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협력과 서로간의 성장을 위한 학습 및 역량강화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강원도내 인권거버넌스의 시작을 다질 수 있다.
- 이를 위해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대 로스쿨, 인권변호사 모임 등과 MOU 체결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권거버넌스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의 안정적 시스템 확보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전국단위의 인권전문가단체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타시도 교육청과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본다.



부록
온라인 설문지

2014 강원도 학생생활문화 및 학교구성원 인권 실태조사(초·중·고등학생용)

안녕하세요.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 내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생활문화와 인권실태를 알아보고 인권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여러분과 후배들이 학습하고 성장하는 공간인 강원도 내 학교의 인권문화를 성장시켜 ‘행복한 학교, 모두가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으므로 평소의 생각대로 편하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학교나 선생님께서 볼 수 없으며, 여러분 학교나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이 조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항을 빠짐없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강원도교육청

A. 여러분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에 대하여 묻습니다.

1.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하여 알고 있나요?

- | | | |
|------------|-------------|------------------|
| ① 처음 들어 본다 | ② 이름만 들어 봤다 | ③ 어떠한 내용인지 알고 있다 |
|------------|-------------|------------------|

※ 유엔아동권리 협약은 국가와 사회가 아동에게 보장하여 주어야 할 권리들에 대하여 규정한 국제조약이며, 대한민국도 1990년 9월 25일 이 조약에 가입하였습니다.

2.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알고 있나요?

- | | | |
|------------|-------------|-------------|
| ① 처음 들어 본다 | ② 이름만 들어 봤다 | ③ 내용도 알고 있다 |
|------------|-------------|-------------|

※ 학생인권조례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에 대하여 각 지방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를 말하며, 현재 서울,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에도 현재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도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3.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인권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	-------	----------	-------------	----------

4. 우리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에도 학생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를 알고 있나요?

① 잘 알고 있다	② 알고 있다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	---------	---------	----------

B. 학교생활에서 여러분의 기본적 권리 보장에 대하여 묻습니다.

1. 선생님과 학교는 성적과 상관없이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하나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	-------	----------

2. 선생님과 학교는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하나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	-------	----------

3. 아침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방학 보충수업 등의 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나요?

(※ 초등학교 학생은 답변하지 마세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	-------	----------

4. 두발(머리길이 및 모양)이나 복장 등 외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나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잘 모른다
-------------	----------	-------	----------	---------

5. 선생님은 개인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하나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	-------	----------

6. 학교에서 각서, 반성문 등의 작성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	-------	----------

7. 학급회의, 학생회(학생대표회) 등이 열리나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	-------	----------

8. 학교규칙 및 학생과 관련한 중요한 학교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나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잘 모른다
-------------	----------	-------	----------	---------

9. 자신의 고민을 누구와 주로 상담하나요? (복수 답변 가능)

① 친구(선후배 포함)	② 보호자	③ 담임선생님	④ 상담 선생님	⑤ 학원 선생님	⑥ 기타	⑦ 없다
--------------	-------	---------	----------	----------	------	------

10.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선생님은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① 그냥 둔다	② 교실 뒤나 복도로 나가 서 있게 한다	③ 도구(회초리 등)를 이용해 신체적인 벌을 준다		
④ 벌점을 준다	⑤ 손을 들고 서 있게 한다	⑥ 상담실 등에서 상담한다	⑦ 말로 주의를 준다	⑧ 기타

11. 동아리 활동이 자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잘 모른다
-------------	----------	-------	----------	---------

12. 하루 수면 시간은 평균적으로 얼마인가요?

① 4시간	② 5시간	③ 6시간	④ 7시간	⑤ 7시간 이상
-------	-------	-------	-------	----------

C. 다음은 지난 한 학년 동안 학교 및 가정에서의 폭력 등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묻습니다.

1. 친구들이나 선후배로부터 맞은 적이 있나요?(선행에 의한 단체 기합 포함)

① 없다	② 일년에 1~2회 정도	③ 한달에 1~2회 정도	④ 1주일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3회 이상
------	---------------	---------------	----------------	--------------

2. 친구들이나 선후배로부터 심한 욕설이나 모욕 등으로 위협을 받은 적이 있나요?

① 없다	② 일년에 1~2회 정도	③ 한달에 1~2회 정도	④ 1주일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3회 이상
------	---------------	---------------	----------------	--------------

3. 친구들이나 선후배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나요?

① 없다	② 일년에 1~2회 정도	③ 한달에 1~2회 정도	④ 1주일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3회 이상
------	---------------	---------------	----------------	--------------

4. 선생님으로부터 체벌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 체벌에는 회초리 등의 도구나 손, 발을 이용한 폭행, 팔굽혀 펴기, 오리걸음 걷기 등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벌과 단체 기합 등을 포함합니다.

① 없다	② 일년에 1~2회 정도	③ 한달에 1~2회 정도	④ 1주일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3회 이상
------	---------------	---------------	----------------	--------------

5. 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포함)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

① 없다	② 일년에 1~2회 정도	③ 한달에 1~2회 정도	④ 1주일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3회 이상
------	---------------	---------------	----------------	--------------

6. 가정에서 부모님(또는 다른 보호자)로부터 신체적인 벌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① 없다	② 일년에 1~2회 정도	③ 한달에 1~2회 정도	④ 1주일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3회 이상
------	---------------	---------------	----------------	--------------

7. 가정에서 부모님(또는 다른 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포함)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

① 없다	② 일년에 1~2회 정도	③ 한달에 1~2회 정도	④ 1주일에 1~2회 정도	⑤ 1주일에 3회 이상
------	---------------	---------------	----------------	--------------

D. 다음은 자신과 학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등을 묻습니다.

(※ 다음 질문은 OECD PISA 2012의 설문을 참고하여 구성하였습니다)

1. 다른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	----------	-------------

2. 우리 학교 선생님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 준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	----------	-------------

3. 우리 학교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행복에 관심이 많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⑤ 잘 모른다
----------	-------	----------	-------------	---------

4. 나는 학교에서 즐겁게 지낸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	----------	-------------

5. 학교에서의 생활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	----------	-------------

E. 다음은 여러분에 대하여 묻습니다.

1. 하루 평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식사, 대화, 놀이 등을 말하며, tv 시청 및 수면시간은 제외)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거의 없다	② 30분 이내	③ 30분 ~ 1시간	④ 1~2시간	⑤ 2시간 이상
---------	----------	-------------	---------	----------

2. 여러분이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① 운동선수	② 한부모가정	③ 다문화가정	④ 장애인	⑤ 조부모가정	⑥ 해당사항 없음
--------	---------	---------	-------	---------	-----------

3. 여러분의 학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인문계)	④ 고등학교(특성화)
--------	-------	-------------	-------------

4. 여러분의 학년에는 총 몇 명의 학생이 있습니까?

① 30명 미만	② 30명 이상 100명 미만	③ 100명 이상
----------	------------------	-----------

5. 여러분 학교의 설립 유형을 골라주세요.

① 국립	② 공립	③ 사립
------	------	------

F. 기타 학생인권에 대해 느낀 점이나 건의할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4 강원도 학생생활문화 및 학교구성원 인권 실태조사(보호자용)

안녕하세요.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 내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생활문화와 인권실태를 알아보고 인권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습하고 성장하는 공간인 강원도 내 학교의 인권문화를 성장시켜 ‘행복한 학교, 모두가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으므로 평소의 생각대로 편하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처리의 수치로만 사용되며, 학교나 개인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이 조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항을 빠짐없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강원도교육청

※ 다음에서 주어지는 질문에 가장 가까운 항목에 ✓ 표시하거나, 적절한 답변을 기재해 주십시오

A. 다음은 여러분에 대하여 묻습니다.

1. 학생과의 관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할머니 ④ 할아버지 ⑤ 기타 (직접 기재해주세요 : _____)

2. 하루 평균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식사, 대화, 놀이 등을 말하며, TV 시청 및 수면시간은 제외)

① 거의 없다 ② 30분 이내 ③ 30분 ~ 1시간 ④ 1~2시간 ⑤ 2시간 이상

3. 자녀나 귀하의 가정이 해당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 선택 가능)

① 운동선수 ② 한부모가정 ③ 다문화가정 ④ 장애인 ⑤ 조부모가정 ⑥ 해당사항 없음

B.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에 대하여 물습니다.

1. 유엔아동 권리 협약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① 처음 들어 본다	② 이름만 들어 봤다	③ 어떠한 내용인지 알고 있다
------------	-------------	------------------

※ 유엔아동 권리 협약은 국가와 사회가 아동에게 보장하여 주어야 할 권리들에 대하여 규정한 국제조약이며, 대한민국은 1990년 9월 25일 이 조약에 가입하였습니다.

2.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① 처음 들어 본다	② 이름만 들어 봤다	③ 내용도 알고 있다
------------	-------------	-------------

※ 학생인권조례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에 대하여 각 지방교육청 단위에서 제정한 조례를 말하며, 현재 서울,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에도 현재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도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3.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인권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	-------	----------	-------------	----------

4. 우리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에도 학생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알고 있다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	---------	---------	----------

C. 여러분 자녀의 학교생활에서의 기본적 권리 보장에 대하여 물습니다.

1. 선생님과 학교는 성적과 상관없이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	-------	----------

2. 선생님과 학교는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	-------	----------

3. 자녀가 아침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방학 보충수업 등의 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초등학생자녀인 경우에는 답변하지 마십시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	-------	----------

4. 학교는 학생에게 두발이나 복장 등 외모에 있어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잘 모른다
-------------	----------	-------	----------	---------

5. 학교가 학생에게 각서, 반성문 등의 작성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	-------	----------

D. 다음은 자녀의 생활에 대한 의견 등을 묻습니다.

1. 등교에 대한 자녀의 일반적인 태도는 어떠하다고 느낍니까?

① 가기 힘들어 하고, 가끔 결석을 한다.	② 가기 힘들어 하지만, 결석은 하지 않는 편이다.	③ 별로 힘들어하지 않는다	④ 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
-------------------------	------------------------------	----------------	----------------

2. 자녀가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순으로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_____)

① 학습	② 교우관계	③ 선생님과의 관계	④ 교외 활동	⑤ 이성관계
------	--------	------------	---------	--------

3.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으로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_____)

① 성적	② 교우관계	③ 건강	④ 자기개발	⑤ 선생님
------	--------	------	--------	-------

4. 지난 한 학년 동안, 귀하의 자녀에게 다음의 일들이 얼마나 있었다고 들었습니까?

원인	없다	년 1~2회	월 1~2회	주 1~2회	주 3회이상
(a) 학생간 폭력(선배에 의한 단체 기합 포함)					
(b) 교내 집단따돌림					
(c) 교사 체벌					

※ 체벌에는 회초리 등의 도구나 손, 발 등 신체를 이용한 폭행, 팔굽혀 펴기, 오리걸음 걷기 등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벌과 단체 기합 등을 포함합니다.

E. 다음은 보호자의 학교 참여 등에 대하여 물습니다.

1. 학교는 중요 학교 정책의 결정에 있어 보호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는 편이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⑤ 잘 모른다
----------	-------	----------	-------------	---------

2.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에 보호자의 참여가 높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잘 모른다
-------------	----------	-------	----------	---------

F. 기타 학생인권에 대해 느낀 점이나 건의할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4 강원도 학생생활문화 및 학교구성원 인권 실태조사(행정부문)

안녕하세요.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 내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생활문화와 인권실태를 알아보고 인권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있는 강원도 내 학교의 인권문화를 성장시켜 '행복한 학교, 모두가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으므로 평소의 생각대로 편하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처리의 수치로만 사용되며, 학교나 개인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이 조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항을 빠짐없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강원도교육청

※ 다음에서 주어지는 질문에 가장 가까운 항목에 ✓ 표시하거나, 적절한 답변을 기재해 주십시오

■ 아래는 귀 학교의 일반 사항에 대한 정보를 묻습니다.

1. 선생님의 학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A) 설립유형	① 사립	② 공립	③ 국립	
(B) 학교 급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인문계고교	④ 특성화고교

2. 학교가 있는 행정 지역은 어떤 규모입니까?

① 리 단위	② 읍, 면소재지	③ 군소재지	④ 시
--------	-----------	--------	-----

3. 학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어떻게 됩니까?

① 10명 이내	② 11~15명	③ 16~20명	④ 21~25명	⑤ 26~30명	⑥ 31명 이상
----------	----------	----------	----------	----------	----------

4. 전체 학생수는 어떻게 됩니까?

(a) 남학생수: _____명

(b) 여학생수: _____명

5. 전체 교직원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a) 남교사수 : 전체 _____명

(b) 여교사수 : 전체 _____명

(c) 기타 교직원수 : 전체 _____명

6.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 동아리 수를 표시해 주십시오.

유 형	활동 동아리 수
(a) 음악활동 (밴드, 합창단, 합주단 등)	
(b) 연극반 (뮤지컬 등 포함)	
(c) 언론 활동 (교지, 신문, 잡지, 방송 등)	
(d) 자원봉사 활동	
(e) 미술 활동 (그림, 서예 등)	
(f) 스포츠 활동	
(g) 기타 ()	

7. 교내의 교사 모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적어 주십시오.

유 형	모임수
(a) 수업연구 분야	
(b) 취미 분야	
(c) 종교 관련	
(d) 기타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4 강원도 학생생활문화 및 학교구성원 인권 실태조사(교사용)

안녕하세요.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 내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생활문화와 인권실태를 알아보고 인권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학생들이 학습하고 성장하는 공간인 강원도 내 학교의 인권문화를 성장시켜 ‘행복한 학교, 모두가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으므로 평소의 생각대로 편하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처리의 수치로만 사용되며, 학교나 개인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이 조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항을 빠짐없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강원도교육청

※ 다음에서 주어지는 질문에 가장 가까운 항목에 ✓ 표시하거나, 적절한 답변을 기재해 주십시오

A. 다음은 선생님에 대하여 묻습니다.

1.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자 ② 남자

2. 선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선생님의 교사 근무 년수는 몇 년입니까?

- | | |
|------------------|-------------------|
| ① 2년 미만 | ② 2년 이상 ~ 5년 미만 |
| ③ 5년 이상 ~ 10년 미만 | ④ 10년 이상 ~ 20년 미만 |
| ⑤ 20년 이상 | |

B.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에 대하여 묻습니다.

1.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① 처음 들어 본다	② 이름만 들어 봤다	③ 어떠한 내용인지 알고 있다
------------	-------------	------------------

* 유엔아동권리 협약은 국가와 사회가 아동에게 보장하여 주어야 할 권리들에 대하여 규정한 국제조약이며, 대한민국도 1990년 9월 25일 이 조약에 가입하였습니다.

2.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① 처음 들어 본다	② 이름만 들어 봤다	③ 내용도 알고 있다
------------	-------------	-------------

* 학생인권조례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에 대하여 각 지방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를 말하며, 현재 서울,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에도 현재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도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3.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인권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	-------	----------	-------------	----------

4. 우리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에도 학생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알고 있다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	---------	---------	----------

C.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기본적 권리 보장에 대하여 묻습니다.

1. 선생님과 학교는 성적과 상관없이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	-------	----------

2. 선생님과 학교는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	-------	----------

3. 우리 학교 학생들은 아침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방학 보충수업 등 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답변하지 마십시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	-------	----------

4. 우리 학교는 두발이나 복장 등 외모에 있어서 개성을 실현할 학생의 권리를 보장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잘 모른다
-------------	----------	-------	----------	---------

5.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각서, 반성문 등의 작성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잘 모른다
-------------	----------	-------	----------	---------

6. 우리 학교는 학급회의, 학생회(학생대표회) 등이 열린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잘 모른다
-------------	----------	-------	----------	---------

7. 우리 학교는 학교규칙 및 학생과 관련한 중요한 학교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잘 모른다
-------------	----------	-------	----------	---------

8. 귀 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고민을 누구와 주로 상담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복수 답변 가능)

① 친구(선후배 포함)	② 부모님	③ 담임선생님	④ 상담선생님	⑤ 학원선생님	⑥ 기타	⑦ 없다
--------------	-------	---------	---------	---------	------	------

9.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 자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잘 모른다
-------------	----------	-------	----------	---------

10. 귀 학교에서 지난 한 학년 동안 다음의 일들이 얼마나 발생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원인	없다	년 1~2회	월 1~2회	주 1~2회	주 3회이상
(a) 학생간 폭력(선배에 의한 단체 기합 포함)					
(b) 교내 집단따돌림					
(c) 교사 체벌					

* 체벌에는 회초리 등의 도구나 손, 발을 이용한 폭행, 팔굽혀 퍼기, 오리걸음 걷기 등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벌과 단체 기합 등을 포함합니다.

D. 다음은 선생님과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하여 묻습니다.

(※ 다음 설문의 일부는 OECD PISA 2012의 설문을 참고하여 구성하였습니다)

1. 우리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 준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	-------	----------	-------------

2. 우리 학교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행복에 관심이 많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⑤ 잘 모른다
----------	-------	----------	-------------	---------

3. 다음은 학교장과 교사의 의사소통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현실을 묻습니다.

(a) 학교장은 교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b)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교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4. 다음은 교사의 학생인권에서의 주체성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현실을 묻습니다.

(a) 교사는 학생인권 실현의 주체로 존중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b) 실제로 교사는 학생인권 증진의 한 주체로서 존중받고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5. 다음은 학교운영의 교사 참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습니다.

(a) 학교운영에 있어 교사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b) 실제로 학교운영에 있어 교사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E. 다음은 선생님의 교육활동 등과 관련하여 묻습니다.

1. 다음의 사항들로 인해 학생들을 위한 선생님의 교육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항 목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a) 과도한 행정업무				
(b) 교육행정의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				
(c) 교장 및 상급자 교육마인드 부족				
(d) 교사와 학생간 유대관계(소통) 부족				
(e) 교사별 수업시간 과다				
(f) 교육 예산의 부족				
(g) 보호자의 지나친 간섭				
(h) 학생에 대한 가정의 지지 부족				
(i) 학생의 수업방해				

2. 다음 중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교권’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 ① 학생들로부터 부여된 존경과 권위
- ② 학교와 교육행정 당국 등에 대한 교사의 권리
- ③ 법 등의 제도나 교육행정으로부터 부여된 교사의 권한
- ④ 학생지도를 위한 통제와 강제력
- ⑤ 기타 _____

3. 학생의 행동이 수업에 방해될 경우 주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 | | | |
|-------------|------------------------|-----------------------------|
| ① 그냥 둔다 | ② 교실 뒤나 복도로 나가 서 있게 한다 | ③ 도구(회초리 등)를 이용해 신체적인 벌을 준다 |
| ④ 벌점을 준다 | ⑤ 손을 들고 서 있게 한다 | ⑥ 상담실 등에서 상담한다 |
| ⑦ 말로 주의를 준다 | ⑧ 기타 _____ | |

F. 다음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물습니다.

(※ 아래의 항목들은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⑤ 잘 모겠다
----------	-------	----------	-------------	---------

(a) 학생들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b) 학생들도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c) 학교문제 해결에 학생들의 의견수렴은 필요하다					
(d) 학급에서 남학생에게 앞 번호를 여학생에게 뒷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다					
(e)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일기장 검사는 교육상 필요하다					
(f) 교사가 학생을 이름이 아닌 번호 등으로 호칭하는 것은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g) 학생 교복에 명찰을 고정시키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G. 다음은 MBI 직무피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 이 사항은 교사의 직무피로도와 학교현장의 인권실태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1. 나는 학생에 관련된 사항은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2. 교사라는 직업을 통해 가치 있는 일을 성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3.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4. 하루 일과를 마칠 때면 지쳐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5. 주변 사람들에게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H. 기타 학생인권에 대해 느낀 점이나 건의할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4 강원도 학생생활문화 및 학교구성원 인권 실태조사(학교장용)

안녕하세요.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 내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생활문화와 인권실태를 알아보고 인권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있는 강원도 내 학교의 인권문화를 성장시켜 '행복한 학교, 모두가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으므로 평소의 생각대로 편하게 응답하시면 됩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통계처리의 수치로만 사용되며, 학교나 개인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이 조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항을 빠짐없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강원도교육청

※ 다음에서 주어지는 질문에 가장 가까운 항목에 ✓ 표시하거나, 적절한 답변을 기재해 주십시오

A. 다음은 귀하에 대하여 묻습니다.

1. 귀하의 연령대는?

- ① 30대 이하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이상

2. 교사로서의 당신의 근무연수는?

- ① 10년 이내 ② 11~20년 ③ 21~30년 ④ 31년 이상

3.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B.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에 대하여 묻습니다.

1. 유엔아동 권리 협약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① 처음 들어 본다	② 이름만 들어 봤다	③ 어떠한 내용인지 알고 있다
------------	-------------	------------------

* 유엔아동 권리 협약은 국가와 사회가 아동에게 보장하여 주어야 할 권리들에 대하여 규정한 국제조약이며, 대한민국도 1990년 9월 25일 이 조약에 가입하였습니다.

2.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① 처음 들어 본다	② 이름만 들어 봤다	③ 내용도 알고 있다
------------	-------------	-------------

* 학생인권조례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에 대하여 각 지방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를 말하며, 현재 서울, 경기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에도 현재 이러한 내용의 조례가 도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3.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인권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⑤ 잘 모르겠다
----------	-------	----------	-------------	----------

4. 우리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에도 학생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알고 있다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	---------	---------	----------

C. 다음은 학교의 교육환경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다음의 사항들로 학교에서의 교육 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항 목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a) 교사의 과도한 행정업무				
(b) 교육행정의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				
(c) 교사의 수업 준비 부족				
(d) 교사와 학생간 유대관계(소통) 부족				
(e) 교사별 수업시간 과다				
(f) 교육 예산의 부족				
(g) 보호자의 지나친 간섭				
(h) 학생에 대한 가정의 지지 부족				
(i) 학생의 수업방해				

2. 학교에 대한 보호자의 태도는 평균적으로 다음의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우선권을 두며, 지속적으로 학교에 압력을 가한다.
② 일부 소수 학생들이 보호자가 성적 향상에 중점을 두고 학교에 압력을 가한다.
③ 보호자로부터의 학업 성적에 대한 부담 및 압력은 거의 없다.

3. 학교에서의 활동에 대한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참여는 어떻습니까?

(기대치와 비교하여, 보호자의 참여가 거의 없으면 0, 기대치를 넘어서면 100으로 표시해 주세요)

항목	참여도 (%)
(a) 학생에 대한 보호자의 자발적 상담	
(b) 교사의 요청에 의한 학생에 대한 상담	
(c) 교과외 활동에서의 자원봉사 (학교 연극, 도서모임, 스포츠, 야외활동 등)	
(d) 보조교사로서의 참여	
(e) 교육과정 설명회 또는 보호자 교육연수 참여	

4. 학교 내 교사들에 대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원인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어느 정도 그렇다	꽤 그렇다
(a) 교사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다.				
(b) 교사들이 학교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c) 새로운 교수 방식과 사례 등을 연구한다.				
(d) 눈높이 수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한다.				

5. 다음 중 귀하가 생각하시는 ‘교권’에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 ① 학생들로부터 부여된 존경과 권위
- ② 학교와 교육행정 당국 등에 대한 교사의 권리
- ③ 법 등의 제도나 교육행정으로부터 부여된 교사의 권한
- ④ 학생지도를 위한 통제와 강제력
- ⑤ 기타 _____

6. 학교 내 교사들에게 다음 중 가장 필요한 것을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a) 급료, 보너스 인상	(b) 전문적 역량 강화의 기회
(c) 진급의 기회	(d) 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위 향상
(e) 자기 책임과 주도적 역할	(f) 학교 운영 및 발전에서의 참여

7.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의 업무에 누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중복 답변 가능)

원인	학교장	교사	학교 행정	지역 교육청	보호자	학생
(a) 학교 예산 책정						
(b) 학생 평가 방안 결정						
(c) 학생 징계 방안 결정						
(d) 교과서 선정						

D. 학교생활에서 기본적 권리 보장 등에 대하여 묻습니다.

1. 선생님과 학교는 성적과 상관없이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하고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	-------	----------

2. 선생님과 학교는 가정형편과 상관없이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하고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	-------	----------

3. 우리 학교는 학생들은 아침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방학 보충수업 등의 참가를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답변하지 마십시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	-------	----------

4. 우리 학교는 두발이나 복장 등 외모에 있어서 개성을 실현할 학생의 권리를 보장한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잘 모른다
-------------	----------	-------	----------	---------

5. 우리 학교는 학생들에게 각서, 반성문 등의 작성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	-------	----------

6. 우리 학교는 학급회의, 학생회(학생대표회) 등이 열린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	----------	-------	----------

7. 우리 학교는 학교규칙 및 학생과 관련한 중요한 학교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잘 모른다
-------------	----------	-------	----------	---------

8.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이 자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잘 모른다
-------------	----------	-------	----------	---------

9. 지난 한 학년 동안 귀 학교에서 다음의 일들이 얼마나 발생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원인	없다	년 1~2회	월 1~2회	주 1~2회	주 3회이상
(a) 학생간 폭력(선배에 의한 단체 기합 포함)					
(b) 교내 집단따돌림					
(c) 교사 체벌					

※ 체벌에는 회초리 등의 도구나 손, 발을 이용한 폭행, 팔굽혀 펴기, 오리걸음 걷기 등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벌과 단체 기합 등을 포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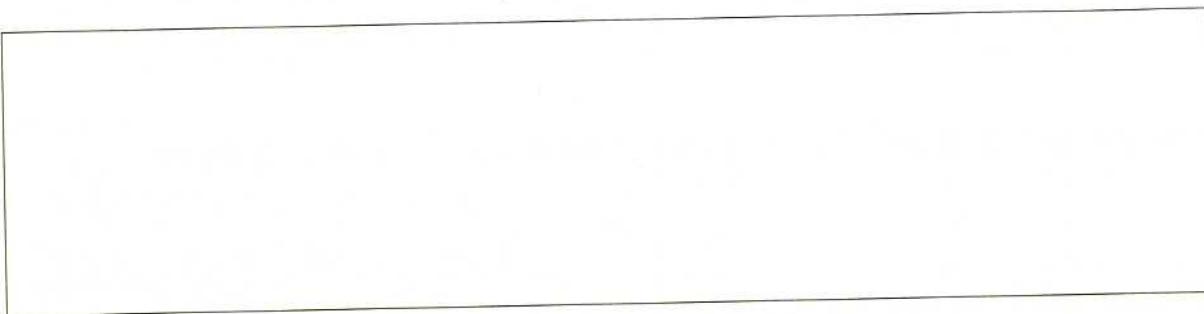
E. 다음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습니다.

(※ 아래의 항목들은 공식적인 의견이 아닌 귀하의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⑤ 잘 모겠다
----------	-------	----------	-------------	---------

(a) 학생들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b) 학생들도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c) 학교문제 해결에 학생들의 의견수렴은 필요하다					
(d) 학급에서 남학생에게 앞 번호를 여학생에게 뒷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다					
(e)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일기장 검사는 교육상 필요하다					
(f) 교사가 학생을 이름이 아닌 번호 등으로 호칭하는 것은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g) 학생 교복에 명찰을 고정시키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F. 기타 학생인권에 대해 느낀 점이나 건의할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